/미/국/

AMERICA

1.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2. 미국의 농수산물 수입 절차
3. 원산지 규정과 운영
4. 식품검역제도 현황
5. 식품위생 검사제도
6. 식품표시제도
7. 미국의 관세제도
8. 수입규제제도와 운영

목 차

1. 농림수산물수출입동향 ····· 589
가. 수출입개요 ····· 589
나. 한국과의교역현황 ····· 593

2. 미국의농수산물수입절차 ····· 597
가. 수입절차 ····· 597

3. 원산지규정과운영 ····· 599
가. 개요 ····· 599
나. 원산지의정의 ····· 599
다. 원산지표시법 ····· 600
라. 표시하지않아도되는물품들 ····· 600
마. 원산지규정을위반했을경우 ····· 601

4. 식물검역제도현황 ····· 602
가. 관련법체계 ····· 602
나. 식물보호법 ····· 602
다. 해외검역공고 ····· 603
라. 검역절차 ····· 609
마. 검역기관과조직 ····· 609
바. 한국산농산물에대한검역규정 ····· 611

5. 식품위생검사제도 ····· 613
가. 위생검사제도(육류검사법) ····· 613
나. 저산성및산성화식품위생검사 ····· 619
다. 식품첨가물 ····· 619

Contents

라. HACCP ····· 622

6. 식품표시제도 ····· 628

가. 기본원칙 ····· 628

나. 신선농산물 ····· 634

다. 건강보조식품 ····· 634

라. 식품라벨표시요건강화내용 ····· 635

7. 미국의관세제도 ····· 641

가. 개요 ····· 641

나. 관세평가제도 ····· 641

다. 기타관세관련참고사항 ····· 649

6. 수입규제제도와운영 ····· 653

가. 수입제한 ····· 653

나. 비관세장벽및조치 ····· 654

다. 바이어테러리즘법 ····· 659

라. 한국산식품수입규제사항 ····· 668

마. 수입검사및규제관련참고 ····· 670

1.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개요

○ ‘05년 미국의 농림축수산물 무역수지는 수출 726억$, 수입 950억$로 224억$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99년 이후의 적자기조가 2006. 3월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입 교역량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임·수산물을 제외한 농축산물에 있어서는 여전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06년 3월 : 수출 176억$, 수입 166억$)

○ 주요 수출품목은 밀, 대두 등 곡물류, 과채류, 육류 등이며,

- ‘05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출국은 ’02년 이후 106억$ 규모의 캐나다가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멕시코, 일본, 중국, 대만 순이고, 한국은 22억$로 5위에 랭크되어 있어 미국의 주 수출국가 중의 하나이나 ‘03년 이후 수출량 감소.
- 특히 2000년 이후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여 ‘99년 9억$이던 수출액이 ’02년 21억$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03년 이후 50억 이상으로 증폭 대한국 수출량을 추월하여 ’05년은 두 배 이상에 이름.
- 2006년 3월 수출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대 한국 수출이 증가폭이 큰 품목은 조 곡류(39백만$ → 116백만$, 195%증), 가금육(6.8 → 15.2, 123%증) 담배(5.8 → 11.3, 91.47%증), 쌀(6.3 → 10.8, 71.53%증), 견과류(10.25 → 16.4, 61%증) 등이며.
- 대 한국 수출이 감소된 품목은 대두분(3.4 → 0.9, 73%감), 조 곡류(67.1 → 27.5, 59%감), 계란제품(0.6 → 0.2, 61%감) 등임

○ ‘05년 농축산물 수입은 캐나다가 123억$로 1위, 멕시코, 호주 순이며, 주 수입품목은 맥주, 와인, 신선 및 가공 과채류, 육류, 과자류, 원두커피 등임

- 대 한국 수입은 ‘05년 농림수산물 286백만$, 농산물 212백만$로 최고 기록을 갱신했던 전년의 306백만$, 233백만$ 보다 각각 6.5%, 9.9% 하락하였음
- 2006. 3월 수입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대 한국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기타낙농제품(1,252천$ → 2,681천$, 114%증), 와인과 맥주(1,054 → 1,878, 78%증), 스낵식품(43,029 → 48,709, 13%증) 등이며,
- 대 한국 수입이 감소된 품목은 종묘 및 절화제품(1,023 → 246, 76%감), 벌크차류(1,347 → 479, 61%감), 신선야채(1,459 → 1,109, 24%감) 등임

< 농림수산물 연도별 교역현황 >

(단위 : 백만U$)

구 분	품 목	2002	2003	2004	2005	1 ~ 3월	
						2005	2006
수 출	농림축수산물	61,039	67,435	70,581	72,636	18,010	20,193
	농축산물	53,115	59,364	61,383	62,939	15,583	17,559
수 입	농림축수산물	67,775	74,980	88,163	95,067	22,829	25,484
	농축산물	41,909	47,376	53,977	59,282	14,498	16,592

자료 : FAS BISCO Report

< 주요 국가별 농축산물 수출현황 >

(단위 : 천만U$)

국 가	2002	2003	2004	2005	1-3월	
					2005	2006
캐나다	8,659,957	9,313,394	9,740,680	10,569,814	2,444,995	2,727,285
일 본	8,382,257	8,903,319	8,138,602	7,873,840	2,028,625	2,171,379
멕시코	7,225,979	7,879,219	8,493,545	9,362,328	1,989,026	2,411,983
한 국	2,671,971	2,884,102	2,488,176	2,226,263	620,873	702,141
중 국	2,067,479	5,016,158	5,541,181	5,224,655	1,371,336	2,345,395
대 만	1,966,011	2,024,683	2,064,321	2,300,236	533,346	603,451
화 란	1,172,993	1,122,415	1,096,707	1,120,959	336,245	388,694
홍 콩	1,090,539	1,112,863	911,878	868,326	210,402	229,658
영 국	1,004,269	1,037,417	1,161,024	1,153,645	261,030	264,427
이집트	862,490	966,488	935,094	836,588	224,022	222,680
독 일	969,941	1,017,455	1,155,924	1,051,230	360,720	241,962
필리핀	775,713	625,428	695,032	797,489	248,517	268,282

자료 : FAS BISCO Report

< 주요 국가별 농축산물 수입현황 >

(단위 : 천만U$)

국 가	2002	2003	2004	2005	1-3월	
					2005	2006
캐 나 다	10,349,595	10,285,851	11,452,858	12,267,749	2,723,244	3,161,368
멕시코	5,518,072	6,300,754	7,262,370	8,332,982	2,203,894	2,887,575
호주	1,893,792	2,120,078	2,485,801	2,421,512	430,963	563,260
이태리	1,789,852	2,081,181	2,302,344	2,581,666	586,357	607,914
화란	1,748,485	1,878,878	1,936,556	1,874,458	458,608	458,150
프랑스	1,485,766	1,771,223	1,742,371	1,768,315	369,235	388,249
뉴질랜드	1,202,897	1,318,333	1,597,967	1,711,627	488,894	463,703
찰레	1,153,635	1,216,043	1,341,500	1,521,031	712,017	814,592
브라질	1,153,794	1,550,129	1,550,129	1,967,507	409,619	509,338
중국	1,001,695	1,287,600	1,615,150	1,872,596	451,527	509,327
콜롬비아	929,477	1,030,928	1,162,029	1,436,468	407,300	427,651
인도네시아	931,379	1,227,305	1,227,305	1,227,305	406,229	492,378
코스타리카	802,966	868,786	898,902	915,821	231,326	315,352
독일	775,923	866,608	922,787	1,006,950	218,737	248,215
스페인	756,853	874,861	914,988	986,879	219,935	240,463
태국	733,480	926,061	1,083,324	1,089,107	268,306	334,065
과테말라	684,511	763,895	783,918	918,153	221,710	235,915
인도	671,250	687,448	857,910	922,121	240,797	253,867
아르헨티나	602,499	572,258	615,555	816,142	180,095	242,277
영국	557,235	553,622	602,232	551,432	110,484	114,332
에쿠아도르	505,337	558,767	581,372	596,238	161,252	181,025
필리핀	436,082	492,103	552,970	566,495	122,692	136,731

자료 : FAS BISCO Report

나. 한국과의 교역현황

< 수 출 >

(단위 : 천U$)

제 품 종 류	2002	2003	2004	2005	4월		
					2005	2006	대비(%)
Bulk 농산물 Total	688,265	752,042	1,285,068	820,379	237,965	253,174	6.39
밀	187,244	205,363	230,919	181,052	46,254	44,298	-4.23
粗 곡 류	79,322	42,175	541,688	234,765	39,493	116,475	194.93
쌀	20,137	27,056	17,507	6,678	6,343	10,880	71.53
대 두	247,150	282,430	284,594	199,406	67,132	27,453	-59.11
면 화	102,670	145,947	157,181	153,969	65,258	35,732	-45.25
담 배	36,931	31,778	23,152	18,515	5,884	11,266	91.47
두 류	2,990	1,933	6,436	1,479	515	455	-11.65
땅 콩	311	78	547	877	205	181	-11.71
기 타	11,510	15,282	23,046	23,637	6,881	6,435	-6.48
중간소재 농산물 Total	735,686	671,243	587,876	609,567	163,077	177,778	9.01
밀가루	435	301	366	288	117	58	-50.43
대두분	15,957	12,995	1,355	4,423	3,440	934	-72.85
대두유	33,831	21,458	300	6,760	6,633	6,675	0.63
야채유	17,889	10,588	14,761	8,070	1,528	2,006	31.28
사 료	83,037	98,378	95,222	108,851	27,758	32,595	17.43
산동물	5,184	7,361	4,910	9,049	556	775	39.39
피 혁	463,273	422,149	384,832	369,660	102,446	106,018	3.49
동물성 수지	20,894	10,066	7,311	11,882	2,009	3,158	57.19
식물종자	83,037	98,378	95,222	108,851	3,019	5,312	75.95
설탕, 감미료, 음료원료	11,634	8,698	8,666	9,426	2,420	3,102	28.18
기 타	68,465	63,461	55,275	63,872	13,151	17,145	30.37
소비자용 농산물 Total	1,248,020	1,460,817	615,233	796,317	219,831	271,189	23.36
스낵식품(탕콩제외)	54,570	53,478	52,823	66,330	11,860	15,563	31.22
breakfast cerals & pancake mix	3,134	2,470	2,731	4,733	997	1,098	10.13

제 품 종 류	2002	2003	2004	2005	3월		
					2005	2006	대비(%)
적색육(fresh/chilled/frozen	680,755	878,107	50,631	150,281	46,240	63,969	38.34
적색육(prepared/preserved	18,964	25,707	5,454	7,325	1,817	2,190	20.53
가금육	78,991	49,539	25,998	46,003	6,844	15,234	122.59
유제품	40,616	43,562	45,228	58,638	14,280	13,196	-7.59
eggs & products	2,772	2,778	3,741	3,233	656	257	-60.82
신선과일	80,384	97,156	110,027	125,295	64,326	73,660	14.51
신선야채	6,232	12,462	14,196	10,360	2,301	2,214	-3.78
과일, 야채 가공품	72,052	65,888	78,047	68,945	16,194	19,971	3.32
과일, 야채 쥬스	38,006	36,262	27,385	33,515	8,544	8,450	-1.10
견과류	25,637	31,242	42,771	56,302	10,192	16,441	61.31
포도주 , 맥주	7,470	10,157	11,129	15,890	3,252	4,016	23.49
종묘, 절화	1,222	920	222	623	121	221	82.64
애완동물 사료	15,408	24,497	20,775	19,745	4,934	5,736	16.25
기 타	121,808	126,590	124,076	129,097	27,271	28,975	6.25
임산 가공품(펄프 및 제지제외)	133,015	138,769	138,326	149,542	30,619	28,882	-5.67
통나무 및 제재목	74,472	87,159	94,843	110,521	4,551	4,557	0.13
원 목	24,659	20,335	18,451	19,755	21,394	19,790	-7.50
침엽수 및 가공품	5,090	2,645	683	639	103	224	117.48
널판 제품(합판포함)	17,080	11,691	11,352	7,662	2,580	1,746	-32.3
기타 목제품	11,714	16,939	12,998	10,965	1,992	2,565	28.77
식용어류 및 수산가공품	296,090	383,287	341,416	392,848	197,313	209,143	6.00
연 어	2,564	4,281	11,866	1,659	237	42	-82.28
연어 캔	3	0	28	534	0	0	0
게, 게살	851	169	1,922	426	232	51	-78.02
명태연육(surumi)	114,449	114,596	91,136	138,707	44,031	52,124	18.38
어 란	65,802	152,738	137,109	151,627	127,496	130,239	2.15
기타 식용 어류및 수산제품	112,422	111,502	99,356	99,895	25,317	26,688	5.42
농축산 가공품 Total	2,671,971	2,884,102	2,488,176	2,226,263	620,873	702,141	13.09
농산,축산,수산,임산물 Total	3,101,07	63,406,158	2,967,919	2,768,653	848,806	940,166	10.76

자료 : FAS BISCO Report

< 수 입 >

(단위 : 천U$)

제 품 종 류	2002	2003	2004	2005	3월		
					2005	2006	대비(%)
Bulk 농산물 Total	2,825	2,483	3,022	3,858	1,347	594	-55.90
밀	0	0	0	0	--	--	--
粗 곡 류	25	22	40	14	7	5	-28.57
쌀	268	468	214	91	17	2	-88.24
담 배	170	9	0	0	0	0	--
고무 및 관련제품	112	279	327	454	38	93	144.74
원료 커피	0	0	0	0	--	--	--
차(Herb tea포함)	1,914	1,580	2,325	3,142	1,238	479	-61.31
원당 및 사탕수수	5	0	0	0	0	0	--
기 타	330	123	116	156	46	14	-69.57
중간소재 농산물 Total	17,511	13,795	14,928	14,095	3,313	3,939	18.90
기타 야채유	4,060	1,060	1,360	912	175	280	60.00
사료(애완 동물용 제외)	89	88	43	64	25	16	-36.00
산 동물	9	0	0	20	0	0	--
피혁 및 동물 껍질	60	5	7	92	32	34	6.25
식물 종자	1,746	1,570	2,196	2,103	458	507	10.70
설탕,감미료 및 음료소재	295	402	564	851	165	71	-56.97
필수 oils	177	55	41	111	3	38	1,166.67
기타 중간 가공품	11,075	10,615	10,717	9,927	2,454	2,992	21.92
소비자용 농산물 Total	130,887	135,137	214,980	193,929	43,029	48,709	13.20
스낵식품(쵸코렛포함)	130,887	135,137	214,980	193,929	43,029	48,709	13.20
적색육 (prepared/preserved)	0	0	0	0	2	0	--

제 품 종 류	2002	2003	2004	2005	3월		
					2005	2006	대비(%)
기타 우유제품	3,737	4,985	5,666	6,953	1,252	2,681	114.14
기타 신선과실	16,061	12,267	14,813	22,462	4,332	4,795	10.69
신선 야채	2,738	3,484	3,654	6,603	1,459	1,109	-23.99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0,995	11,950	11,844	14,464	3,477	3,857	10.93
과실 · 채소 쥬스	4,265	956	1,372	633	111	147	32.43
너 츠 류	2,505	899	2,034	2,118	120	125	4.17
포도주 및 맥주	3,722	5,281	6,313	6,061	1,054	1,878	78.18
종묘 및 절화 제품	1,420	2,615	2,143	3,292	1,023	246	-75.95
인스탄트 및 구운 커피	440	845	1,118	1,779	483	577	19.46
양 념 류	1,306	1,278	1,201	1,755	446	228	-48.88
기타 소비자용 가공품	68,762	75,939	149,465	111,992	25,079	28,594	14.02
임산 가공품(펄프 및 제지 제외)	4,655	5,343	5,886	4,784	893	1,086	21.61
원 목	9	55	83	0	0	53	--
침엽수 및 가공품	0	354	30	30	0	0	--
널판 제품(합판포함)	1,300	1,164	2,029	707	58	520	796.55
기타 목제품	3,346	3,770	3,744	4,047	835	513	-38.56
식용어류 및 수산가공품	67,406	70,205	67,392	69,669	18,300	15,791	-13.71
새 우	157	201	227	198	74	111	50.00
튜 나	1,670	1,924	3,387	3,955	1,009	830	-17.74
바다 가재	0	15	25	0	0	0	--
갈은 생선	417	663	568	449	46	83	80.43
기타 식용 어류및 수산제품	65,040	67,403	63,184	65,067	17,171	14,767	-14.00
농산 가공품 Total	151,223	151,415	232,930	211,882	47,690	53,241	11.64
농산,수산,임산물 Total	223,284	226,963	306,208	286,334	66,883	70,118	4.84

자료 : FAS BISCO Report

2. 미국의 농수산물 수입 절차

가. 수입 절차

○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은 아래의 절차를 밟아 수입됨

입 항	⇒	CBP	⇒	FDA	⇒	CBP Agricultural Specialist	⇒	Pick up (등록된 운송회사)

① 수입회사가 수입신고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관세청의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를 준비

② 국토안보국(CBP)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시키고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함

③ 신선 농산물의 경우 CBP Agricultural Specialist에서 병충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수입허가를 하며, 병충해 발견시 선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CBP 감독하에 폐기 또는 반환조치

④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여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이 허가됨

⑤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며, 이 조사는 FDA 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 짐

⑥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그 즉시 수입이 허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수입이 거부됨

⑦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음

⑧ 최근 샘플조사없이 억류조치할 경우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합당하면 허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됨

○ 이상의 절차는 간단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으나, FDA의 샘플조사가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농림수산물의 경우, 샘플조사의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식품의 유통시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으니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샘플조사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수입 이력에 따라서 샘플 검사없이 억류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통관지연 사례 급증**

* 우리 농수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것과 수입 금지 내지 제한 품목을 사전에 숙지하여, 제한 품목은 수입허가 등 일정요건을 만족시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3. 원산지 규정과 운영

가. 개 요

○ 미국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 원산지 표시 규정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미국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단 가공농산물의 경우 일반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표기 규정이 적용되며, 신선 농산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

나. 원산지의 정의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산지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개조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최종 소비자 (Ultimate purchaser가 구입할 때 그 상태의 물품을 의미함.

예 A. :

- 한국회사가 호주에서 오렌지를 수입하여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오렌지 통조림을 만들었다. 이 오렌지 통조림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최종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마켓에서 통조림을 구입하는 사람들)이며 물품은 오렌지 통조림이 된다. 이 경우 통조림을 만들기 위하여 호주산 오렌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통조림이 만들어 졌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 만일 같은 회사가 한국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자체 공장에서 통조림을 생산하게 되면 원산지는 중국이 된다. 이 경우 본사는 한국에 있더라도 통조림이 생산되는 국가에 따라 원산지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다.

예 B. :

- 한국회사가 한국에서 생산된 사과를 호주 지사로 보내 호주에 있는 공장 에서 사과 통조림을 생산하였다. 이 경우, 사과는 한국산이라도

통조림이 호주에서 생산되었으므로 원산지는 호주이다.

예 C. :

- 같은 한국회사가 한국산 사과를 미국에 있는 지사로 보내 미국 현지 공장 에서 사과 통조림을 생산하였다. 이 경우, 수입품은 사과이며 최종소비자는 미국 현지 공장이 된다. 또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과 통조림은 수입품이 아니고 국내 생산품이 된다.

다. 원산지 표시법

○ 국가명 ;

-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반드시 표준영어로 표기법에 맞는 영어로 된 국가 이름이라야 한다. 따라서 한국상품일 경우, 반드시 Korea를 사용하여야 함.(예 : Made in Korea, Product of Korea).

○ 표시방법 ; 표시방법은 3가지 규칙이 적용.

① 눈에 잘 뜨이는 곳에

② 읽기 쉽게

③ 지워지거나 분실되지 않게

- 따라서 아주 작은 활자로 포장지 구석에 표시할 경우 원산지 규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

① 가짓수가 많은 물품들이 한 상자에 들어 있을 경우, 최종 소비자가 상자에 있는 표시만 보고도 그 상자에 있는 물품들이 어느 나라 산인지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상자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에는 표시를 안 해도 됨. 예를 들어 사과나 계란을 판매하는데 상자에 원산지

표시가 확실히 되어 있고 물품이 상자 속에 진열되어 판매할 경우에는 상자에 있는 원산지 표시만으로 충분함. 하지만 판매자가 사과를 상자에서 꺼내어 갯수당 팔고 판매소에 상자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과 한개 한개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여야 함.

② 샘플일 경우

③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쌀이나 쌀가루일 경우 포장지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직접 쌀이나 쌀가루에는 표시를 안해도 됨.

④ 생산한지 20년이 넘는 물품들

⑤ 수입 후 판매 전에 대대적인 재포장이 이루어질 경우 : 예를 들어 한국 물품을 미국 현지 회사가 수입하여 포장을 대대적으로 바꿀 경우에는 재 포장할 때 원산지를 표기하면 됨. 이 경우는 관세청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마.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적용됨.

① CF4647 (Customs Form 4647 : Notice of Redelivery - Markings, etc.)이라는 경고서류가 발급됨. 이 서류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를 적절하게 표시하여 해당 관세청에 물품을 다시 제시하여야 함. 이 CF4647이 발급될 경우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 Ad Valorem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관세를 지불하여야 함.

② 만약 30일 이내에 재제시가 어려울 경우 관세청에 CF4647의 Deadline을 연장하도록 (Extension) 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음.

③ 고의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 첫 번째로 고의가 판정되면 10만불까지의 벌금과 1년까지의 감옥형이 적용됨. 재범이후에 대한 유죄 판결시는 25만불까지의 벌금과 1년까지의 감옥형이 적용됨.

4. 식물검역제도 현황

가. 관련법 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해외검역공고 등을 통하여 운영됨

나. 식물보호법(7 USC, Chapter 104)

○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미첨부된 경우에는 수입불가(제1조)

- 묘목 :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묘(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Shrub), 덩굴(Vine), 삽수(Cutting), 접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제6조)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식 기타 초본식물, 구근(Bulb), 뿌리(제6조)

○ 상기 묘목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제5조)

- 이 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국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전에 공고 및 입법예고(public hearing)과정을 거쳐야 함

○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결

정사항을 공포함(제7조)
- 공고과정은 제5조의 내용과 동일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제9조)

다. 해외검역공고(Foreign Quarantine Notice)

□ 해외검역공고 7CFR 제319.56호(과실 및 채소류)

① 일반사항

○ 미국에 없거나 널리 분포하지 않는 과실 및 채소의 과실파리(Fruit Fly), 외파리, 유해 병해충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기타 해외국가에 존재할 때 이들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과실, 채소를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는 경우 이들 해충의 미국내로 유입 우려되는 경우 상기지역으로부터 과실, 채소와 이들의 포장재로 쓰인 식물체의 수입금지를 선언함

○ 미국의 정의 : 미국대륙,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미버진아일랜드

② 과실 및 채소의 괌으로의 수입과 관련한 행정지침

○ 다음의 것은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독처리 없이 괌으로 유입가능
- 보닌제도, Bolcano제도 및 유구열도산의 모든 엽채류, 근채류
- 일본 및 한국산 : 파(Allium), 아티쵸크(Artichokes), 바나나, Bell pepper 양배추, 당근, 셀러리, 배추, 감귤류(Citrus fruits), 가지, 포도, 상치, 멜론, 오크라, 파슬리, 완두, 감, 감자, 대황, 호박류, 핵과 및 인과(Pome fruit), String beans, 고구마, 토마토,

순무잎, 순무, 수박

○ 기타의 것은 본 공고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③ 과실 및 채소 수입에 대한 제한

○ 건조, 경화, 가공된 것은 허가 없이 수입가능

- 단, 병해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는 안전조치를 따른 후 허가를 받아야 함(필요사항은 공고)

○ 별도의 검역규정이나 행정명령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과실, 채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지정된 항을 통하여 수입허가 가능

- 원산지에서 과실파리 및 외파리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
- 허가서에서 규정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질 때
- APHIS가 규정한 조건, 절차에 따라 미검역관의 감독하에 소독이 될 수 있을 때

④ 도토리, 밤 수입에 적용되는 조건에 관한 행정지침

○ 캐나다 및 멕시코산 이외의 도토리, 밤은 MB소독 조건부로 수입가능

⑤ 냉동과실 채소의 수입을 허가하는 행정지침

○ 냉동처리라 함은 급속냉동(Quick freezing), Sharp Freezing, 냉동팩을 포함

- 일반적으로 냉동이라 함은 초기에 0°F(-17.8℃) 전후에서 급속냉동 시켜 20°F(-6.6℃)에서 보관 운반하는 것을 말함

○ 미국 도착시 미검역관이 냉동상태에 있다고 판정하기 전까지는 선박 등으로부터 이동 불가

○ 도착지검사에서 20°F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 검역관이 규정하는 안전조치에 따라 선박 등에 대기
- 미 영역 외로 반출
- 검역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분

○ 원산지에서 해당물품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냉동처리로도 병해충이 사멸되지 않았다고 검역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불가

⑥ 특정 수입과실 저온처리에 대한 행정지침

○ 과실파리, 코드린나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허용을 위한 저온처리 지침

⑦ 호주(타즈마니아포함) 및 뉴질랜드산 사과, 배의 수입에 적용하는 조건

○ 표본추출 결과에 따라 조건부여
- Tortricidae가 없는 경우 현지에서의 안전조치가 행해진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가능
- Tortricidae가 있는 경우 : MB훈증

⑧ 특정국가산 포장재배 포도의 훈증법을 규정하는 행정지침

○ 다음 국가산 포장재배 포도는 허가서에 기재된 기타조건에 MB훈증 추가
- 대상국가 : 알제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시리아, 소말리아

○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국가산 포도는 저온처리 되어야 함

⑨ 일부 유럽국가산 사과, 배의 수입과 관련한 행정지침

○ 수입가능 국가

- 사과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에이레, 스웨덴, 스위스, 서독
- 배 :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 현지검역비용 협약

- 수출국 식물검역소와 APHIS간에 현지검역비용 협약을 맺은 경우만 수출 가능
- 해당비용 : 검역행정비용, 봉급, 여행비용, 임시비용

○ 수출국의 책임

- 개화기와 수확기 사이에 최소한 2회 조사실시
  - 한 과수원에서 Leucoptera manifoliella 흔적 발견시 해당 과수원산은 선적이 거부됨
  - 기타 Pear Leaf Blister Moth 등 발견시는 주변 반경 1㎞내의 기타 과수원을 미 환경보호청에서 승인한 살충제로 소독해야 함
- 승인된 선과장에서 작업검사
  - 검사물량 : 한 팔레트(약 42상자)당 3개의 상자 또는 3개 Bin당 80개의 과실을 전수 조사
  - 유충, 번데기 상태의 Leucoptera manifoliella 발견시 선적거부(해당 더미 및 여타분)

○ 현지검사

□ 해외검역공고 제319.28(묘목, 식물체, 뿌리, 구근, 종자, 기타 식물성 산물)

금지품목	금지사유	금지지역
○Rutaceae과의 Aurantioideae, Rutoideae, Toadalioideae 두 과의 모든 속, 종, 변종에 속하는 모든 과실, 껍질	감귤궤양병 (Xanthomonas citri Dowson)	동남아시아(인도, 미얀마, 실론, 태국, 인도차이나, 중국 포함), 말레이열도, 필리핀군도, 오세아니아(호주 및 타즈마니아는 제외), 일본 및 부속도서, 대만, 모리셔스, 세일첼레스, 브라질, 파라과이
○Citrus 속의 모든 종 및 품종의 과실 및 껍질 - 다음의 것 포함 · C. aurantifolla Swingle · C. auranium L. · C. hystrix DC. · C. limon Burm f. · C. paradisi Macf. · C. reticulata Blanco · C. sinensis Osbeck · Fortunella margarita	Sweet orange scab(Elsinoe australis Bitano and Jeukins)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Citrus 속의 모든 종 및 품종의 과실 및 껍질 - 다음의 것을 포함 · C .aurantifola Swignle · C .auranticum L · C .limon Burm.f. · C.medica L. · C.sineusins Osbeck	Cancrosis B (세균병)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① 금지대상

○ 단 종자 및 가공된 껍질은 제외

- 종자의 경우는 해외검역공고 319.37호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

② 한국산 온주밀감은 다음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후 미국의 특정지역(“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텍사스”을 제외한 지역)내로 반입될 수 있음

<안전조치 내용>

○ 대미 수출용 온주밀감은 한국검역소가 설정한 궤양병 무병 수출단지에서 생산·포장된 것이어야 함

- 수출단지에는 온주밀감만 재배
- 온주밀감 이외의 Citrus속 및 Poncirus의 과실, 껍질, 식물, 순(Budwood)의 유입차단 조치 필요
- 한·미의 식물병리학자에 의하여 궤양병 무병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함

○ 한·미 합동검사실시

- 수확전, 수확시 : 포장검사
- 포장시 : 선과장에게 과실검사

○ 포장전에 과실표면소독처리(미 농무성 규정에 의함)

○ 다음방법에 따라 수출지역산임이 확인되어야 함

- 포장지 및 상자에 미국내의 ‘ 반입금지 지역명 ’을 인쇄
- 한국 식물검역소의 증명서첨부 : 궤양병이 없음

○ 미 도착항에서 미농무성검역관에 의한 최종검사실시

③ 기타

○ 실험연구용 목적으로 농무성이 수입하는 것은 본 고시 적용에서 배제됨

○ 위의 금지품목이라도 Guam으로는 수입가능

○ 상기 수입가능한 경우에는 해외검역공고 제319.56호에 의한 허가 등의 적용을 받음

○ 한국 현지검역에 필요한 제비용은 검역신청자가 지급

라. 검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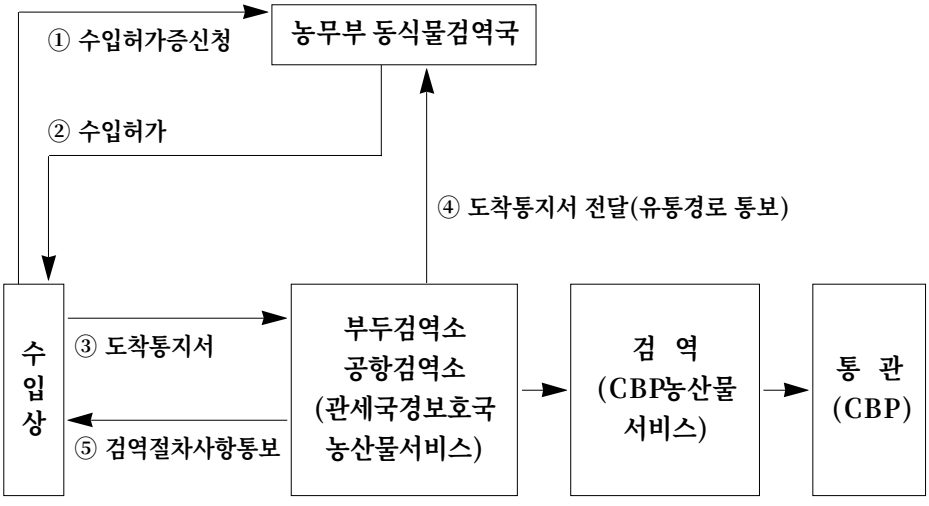

마. 검역기관과 조직

미국에서 동식물의 검역에 대한 업무는 농무부 산하의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관 관련 검사 업무는 911 이후 신설된 관세국경보호국(CBP) 산하 농업서비스(Agricultural Service)로 이관

□ 주요임무

○ 항만이나 국경선을 통한 외국 농산물의 해충과 질병 유입방지

○ 유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따른 긴급조치 및 해소

○ 국내의 가축질병과 식물 해충의 퇴치

○ 국내의 동식물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결함 해결

○ 과학적인 식물위생 규격 설정에 의한 농산물 수출 촉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천연자원, 국민보건및 안전에 대한 피해 예방

○ 생명공학 및 유전자 조작기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

□ 조직(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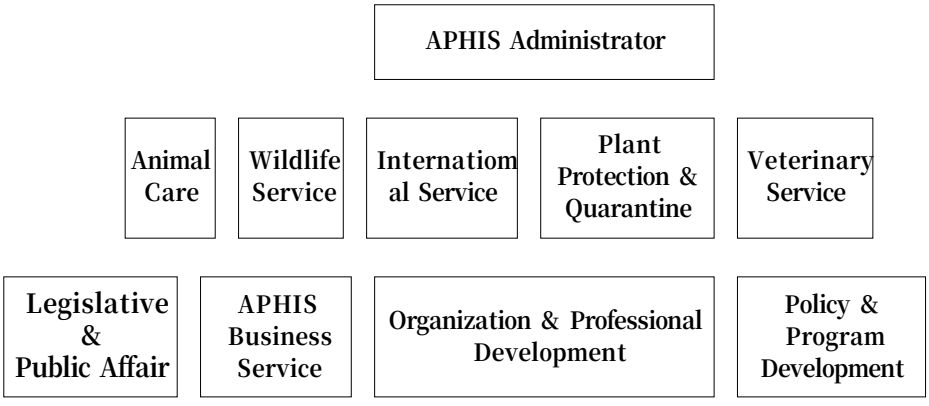

□ 부서별 수행업무

○ Plant Protection & Quarantine(PPQ)

- 세계 각국으로 부터의 가축질병및 식물해충의 유입방지
- 공항및 항만등에서 여행객의 화물검사
-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시 위생검사 증명서 발급 등

○ Veterinary Service(VS)

- 수입 가축및 가공품의 검사를 통한 국내 가축의 건강보호
- 수출되는 가축및 가공품의 위생검사 증명서 발급 등

○ Wildlife Service(WS)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및 천연자원의 훼손 방지
- 희귀동물에 대한 보호
- 야생 조류및 동물에 대한 보호 등

○ International Service(IS)

- 미국의 농업보호를 위한 미국외에서의 업무및 농업무역 강화
- 관련 외국과의 정보망 구축, 기술정보 교환 및 자료 제공
- 미국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규제사항에 대한 외국기관과의 협정체결 및 운영관리 협의

○ Animal Care(AC)

- 연구, 전시회, 규정개발에 사용되는 가축의 검사관리

○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PPD)

- APHIS에 관한 정책개발, 규칙제정, 정책분석및 평가
- 해충관리 정책에 관한 미생물적 위험요소 규정제정및 관리
- 환경정책에 관한 법규관리및 요소 분석 등

○ Legislative and Public Affairs (LPA)

- APHIS를 위한 법률안 및 공공 업무 개발
- 각종 공공자료의 가공및 제공 등

○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OPD)

- 분소및 지소 설치 및 지원관리
- 인사관리, 교육훈련실시 및 모니터링, 직원 자질향상 프로그램 개발
- 분소및 지소 설치 관리지원

○ APHIS Buisiness Service(ABS)

- APHIS의 인사, 재정, 물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달
- APHIS의 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 및 대응방안 강구
- 각종 유관 기관에 대한 실적보고및 자료제공 등

바.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규정

□ USDA 수입허가 없이 수입가능한 품목

○ Cannonball fruit, 코코아 야자열매(껍질 혹은 즙액이 없는 것), Corn smut galls(소비용의 신선한 것 또는 냉동된 것), Cyperus corm(방동사니속), 백합구근, Maguey잎, 버섯(신선한 것), 땅콩(생것, 단 중국, 필리핀, 태국으로부터 금지된 것은 제외), St Johnsbread, 타마린드 콩꼬투리, 송로(버섯 조미료), Water chestnut(마름), Waternut

※ 건조, 경화 및 가공처리된 과일 및 채소류

□ USDA 수입허가후 수입가능한 품목

○ **우엉뿌리, 마늘구경(건조, 상부없는 것), 생강뿌리, 연뿌리, 호박잎, 무우뿌리(상부없는 것), Sand pear(동양배: 현지검역 조건), 참깨잎, 시금치, 참마(MB훈증 조건), 취나물(잎, 줄기), 온주밀감(현지검역조건), 밤(MB훈증조건), 사과(저온+MB훈증조건), 토란뿌리(단, Guam제외), 딸기열매(단, 9.15일 이후 다음해 5.31일까지 반입되는 것에 한함), 고들빼기의 잎, 줄기, 뿌리, 더덕(뿌리), 도라지(뿌리), 쑥갓 등 국화속식물, 가지, 참다래, 상치(잎), 쑥, 양파(구근), 두릅순, 들깨잎, 냉이(잎,줄기), 근대(잎), 양갓냉이(잎,줄기), 감, 박과류, 파프리카**

□ 냉동과일 및 냉동채소(모든 나라로부터 수입가능)

□ USDA 수입허가후 Guam 및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로 수입가능한 품목

○ **Allium속(파, 마늘 등), 아티쵸크(엉겅퀴과), 바나나의 과실과 잎, 깍지콩(Bean, string : 꼬투리 혹은 껍질있는 것), bell pepper(피망), 양배추, 당근, 셀러리, 근대잎, 배추, 국화속식물의 잎과 줄기(쑥갓, 제충국 등), 감귤류(citrus), 박 식물(cucurbit), 가지, 포도, 상추, Marsh mallow(양아욱)의 잎, 오크라(닥풀속), 파슬리, 완두콩(꼬투리 혹은 껍질이 있는 것), 후추잎, 들깨잎, 인과류의 과실(사과, 배 등), 감자, 대황, 핵과류의 과실, 고구마, 토마토, 순무의 잎, 줄기 및 뿌리, 제2)항 및 제4)항의 식물중 "밤", "마"(수입조건으로 소독처리를 요하는 과실 및 채소)를 제외한 식물**

□ USDA 수입허가후 Honolulu, Hawaii로만 수출가능한 품목

○ **타로(토란, 상부없는 것), Sand pear(Pyrus pyrifalia)**

5. 식품위생 및 검사제도

농무부 산하 FSIS에서는 육류 및 가금육의 식품위생과 안전심사를 담당하고, FDA에서는 기타 일반 식품 및 신선 농산물을 담당함

가. 위생검사제도(육류검사법)

□ 개요

○ 육류 및 가금육의 위생과 안전검사를 위해서 미국 식품안전국(FSIS)의 검사요원이 미국 전역의 6,200개에 달하는 도살장 및 육류가공공장에 상주하면서 현행 법률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검사시 중점을 두고 있는 규칙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 법률은 ① Federal Meat Inspection Act ② Federal Poultry Product Inspection Act ③ Federal Egg Inspection Act
- 모든 도축장과 육류 가공공장은 자체 생산제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HACCP로 불리는 Process Control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 모든 도축장은 유해 미생물의 1차적 오염원인인 배설물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신들의 공정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E. Coli균속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야 함
- 모든 육류 처리공장은 최종제품이 유해 미생물로 부터 오염이 감소된 위생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문서화된 표준작업공정(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함

□ FSIS의 제도 시행 목표

FSIS는 육류, 가금육, 계란가공품의 생산업체를 관리함으로서 이들 제품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최소화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다음의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① 원료육의 병원성미생물 감소

○ 2000년까지 육류 가공제품들은 100%가 HACCP시스템 관리하에서 생산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과학적 결과에 근거한 HACCP제도 및 각종 규제법규의 보완

○ E. Coli O 157 : H7, Salmonella와 기타 병원성 미생물을 보다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技法 발굴

○ ‘99년까지는 95%이상에 이르는 도축장(소, 돼지, 닭, 칠면조 등)들이 자체적으로 Salmonella균을 일상적으로 시험하게 함

②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안전성 제고

○ 2000년까지는 FSIS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계, 학술 및 교육기관, 식품 관련 과학자,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연간 158백만명에 식품위생 정보를 제공

○ 식품의 수송및 유통기간중의 안전성 개선 도모

○ 미 전역에 상용되도록 식품가공 母法인 Food Code와 일치화

③ HACCP제도 및 식품안전에 관한 지원강화

○ HACCP규칙에 의해 적용받는 생산업체 종사자들의 훈련

○ 규정제정을 통해 업체종사자의 식품안전성에 책임성 강화

○ 식품 안전성을 조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 HACCP 이론과 실천방안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FSIS Management Development Academy 설립

④ 국제간의 교류 증진

○ 수입식품에 대해 적절한 국내 식품안전기준을 적용시킴으로서 미국산 식품의 안전성 제고

○ Codex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Codex Alimentarious에의 참여와 공정무역거래 제고를 위한 국제식품 안전기준 제정 및 실시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HACCP)

○ 모든 생산공장에서는 반드시 각각의 가공공정마다 HACCP 제도에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함

○ 이 HACCP 제도는 각 업체들이 각각의 제품 생산공정에서 미생물적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공정의 상태를 밝혀내어 그러한 유해성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건을 확립하고, 모든 작업이 의도한 데로 처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자료로 남겨야 함

○ 업체들은 다음 7가지의 원칙을 근거하여 HACCP시스템을 확정하여야 함
- 위해검사방법(Hazard analysis)
- 임계 조절점 분류(Critical control point identification)
- 임계상한점 확립(Establishment of critical limits)
- 제조공정 모니터(Monitoring procedures)
- 수정방안(Corrective actions)
- 기록보존(Record keeping)
- 제조공정의 입증(Verification procedures)

○ HACCP 제도의 이행시기는 공장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에 맞는 자체 제도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최종 규칙이 공포된 후 18 4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고용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음

○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업체 : 18개월 이내
(※ 도살장의 75%, 육가공업체의 45%가 여기에 해당됨)

○ 종업원 10명 ~ 50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 : 30개월

○ 고용원 10명 미만 또는 연간 매출액 $250 이하 업체 : 42개월

○ FSIS는 이 HACCP 제도가 원료육과 가금육의 가공시 유해미생물을 감소시키며 조정하므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고 있음

※ 담당기관

FSIS Food Safety Education and Comunication Staff
Room 2932-South Building : 1400 Independence Ave. S. W.
Washington. D. C. 20250
Phone : (202)720-7943
Fax : (202)720-1843

□ 병원성 미생물검사(Pathogen Reduction and Microbial Testing)

○ FSIS는 모든 도축장에 대해 식용가축의 내장(대장)속에서 보편적으로 검출되는 대장균(E. Coli)의 일종인 E. Coli 균속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최종규칙이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각 공장에서 가축분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공정관리 시스템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FSIS는 HACCP시스템이 유해성 박테리아의 오염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도축장과 육류가공 공장에서 1차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Salmonella균에 대한 병원 미생물감소 표준방법을 확정하였음

- 이 표준방법은 식품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로서 각 처리장에 제공될 것이며 FSIS는 이 표준방법에 의한 위생검사 결과만을 인정하게 될 것임

○ 이 표준제도를 적용하는 시기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HACCP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됨

※ 담당기관

FSIS Food Safety Education and Comunication Staff
Public Outreach and Comunications
Phone : (202)720-9352
Fax : (202)720-9063

□ 표준 작업공정(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Sanitation)

○ 모든 공장에서는 제품은 위생적으로 생산할 목적으로 그들의 시설과 장비의 청결유지에 책임을 다하는 나름대로의 표준작업공정(SOPs)을 반드시 준비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제도는 최종 규칙을 공표한 후 6개월부터 발효됨

□ 공장출고 이후의 안전 취급(Safe Handling Beyond the Plant)

○ FSIS는 육류제품의 수송과 저장중에 발생되는 유해성 병원미생물의 번식을 조절하는 표준방법과 표준조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공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소매과정에서의 식품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FDA와 주정부 및 지역 감독기관들과도 함께 공조하고 있음

○ 또한 FSIS는 식품의 안전 취급에 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조직과 식품산업체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음.

□ 실행비용(Implementation Cost)

○ FSIS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 4년간은 $305-$357백만 정도, 그 이후에는 매년 약 $99.6-$119.8백만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 제도의 실시에 따라 얻어지는 질병감소에 의한 의료비 지출감소, 생산성 저하예방 효과 등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990백만-$37억에

상당하는 공중건강 이익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제도의 실행에 의한 총비용은 제품 1파운드당 0.1-0.2센트에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소규모 업체를 위한 지원(Assitance for Small Plants)

○ FSIS는 상당수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에서 이 HACCP제도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소규모 업체에서도 이 제도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FSIS는 주요공정을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13개 유형의 HACCP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은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공정별 조건확립을 함에 있어 참고적인 청사진 개념으로 사용 될 수 있음

○ 또한 FSIS는 미국지역을 몇개로 나누어 아주 작은규모의 소형업체에서도 HACCP 제도에 따라 실질적인 공정관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타업체에 보여주기 위한 소규모 업체지원 Project를 최종 규칙이 공포된 후 2년간에 걸쳐서 수행하게 됨

○ 뿐만 아니라 FSIS는 본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업체의 규모별로 적합한 각종 기술지원과 자료제공을 준비하고 있음

○ FSIS가 준비한 자료에는「Guidebook for the Preparation of HACCP Plans」및「Hazzard and Preventive Measures Guide」등이 있음

※ 담당기관

FSIS Food Safety Education and Comunication Staff
Room 2932-South Building : 1400 Independence Ave. S. W.
Washington. D. C. 20250
Phone : (202)720-7943
Fax : (202)720-1843

나. 저산성 및 산성화 식품 위생검사

○ 미국으로 통조림 제품 같은 저산성식품(LACF:Low-Acid Canned Food)과 산성식품(AF:Acidified Food)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미국 FDA에 제조 시설을 등록하고, 제조공정을 제출해야 함

- 저산성식품 : 열가공후 밀봉용기(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에 무균상태로 포장된 pH가 4.6 이상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인 식품
- 산성식품 :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인 저산성식품(Low-Acid Food)에 산 등을 참가하여 pH를 4.6 이하로 조절한 식품

○ FDA에서는 서류검사를 통하여 등록업체에 FCE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교부하고 있으며, FCE #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가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FCE #는 수입허가가 아니고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으로 수입통관시 FDA의 검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 등록에 필요한 서류교부 및 신청은 아래의 FDA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e-mail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 담당기관

LACF Registration Coordinator(HFS-618),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200 C St., SW, Washington, DC 2020
e-mail : LACF@CFSAN.FDA.GOV

다.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은 품질(맛, 색택 등)의 향상 또는 보존을 위해서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및 저장시 첨가되는 물질로 미국 FDA에 의해 승인된 것만 사용이 가능함

-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DA에 신청를 해야하며, 이때 동물실험 등을 통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승인된 첨가물에 대해 FDA는 사용이 가능한 식품종류, 최대사용량 및 라벨표기법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
- 육류 및 가금육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별도로 US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색소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일종으로 식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염료와 색소로 천연색소와 인공색소로 구분됨
- 인공색소는 FDA의 승인이 필요하며, 식품에 사용하였을 경우 포장용기에 색소명을 성분표시해야 함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기 능	식품첨가물	사용되는 식품
Impart	Alginates, Lecithin, Mono-& Diglycerides, Methyl Cellulose, Carrageenan, Glyceride, Pectin, Guar Gum, Sodium Aluminosilicate	Baked, Goods, Cake Mixes, Salad dressings, Ice cream, Process Cheese, Coconut, Table Salt
Improve	Vitamins A and D, Thiamine, Niacind, Riboflavin, Pyridoxine, Folic Acid, Ascorbic Acid, Calcium, Carbonate, Zinc Oxide, Iron	Flour, Bread, Biscuits, Breakfast Cereal, Pasta, Margarine, Milk, Iodized Salt, Gelatin Desserts
Maintain Palatability & Wholesomen ess	Propionic Acid & its Salts, Ascorbic Acid, Butylated Hydroxy anisole(BHA), Butylated Hydroxy toluene(BHT), Benzoates, Sodium, Nitrite, Citric Acid	Bread, Cheese, Crackers, Frozen & Dried Fruit, Margarine, Lard, Potato Chips, Cake Mixes, Meat
Produce Light Texture	Yeast, Sodium Bicarbonate, Citric Acid, Fumaric Acid, Phosphoric Acid, Lactic Acid, Tartrates	Cakes, Cookies, Quick Breads, Crackers, Butter, Chocolates, Soft Drinks
Enhance Flavor or Impart DesiredColor	Cloves, Ginger, Fructose, Aspartame, Saccharin, FD&C Red No. 40, Monosodium Glutamate, Caramel, Annatto, Limonene, Turmeric	Spice Cake, Gingerbread, Soft Drinks, Yogurt, Soup, Confections, Baked Goods, Cheeses, Jams, Gum

<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인공색소 >

색소명	일반 이름	색 상	사 용 가 능 식 품
FD&C Blue No.1	Brilliant Blue FCF	Bright Blue	Beverage, Dairy Product Powder, Jelly, Confection, Condiment, Icing, Syrup, Extract
FD&C Blue No.2	Indigotine	Royal Blue	Baked Good, Cereal, Snack Food, Ice Cream, Confection, Cherry
FD&C GreenNo.3	Fast Green FCF	Sea Green	Beverage, Pudding, Ice Cream, Sherbert, Cherry, Confection, Baked Good, Dairy Products
FD&C RedNo.40	Allura Red AC	Orange Red	Gelatin, Pudding, Ice Cream, Sherbert, Cherry, Confection, Beverage, Condiment
FD&C RedNo.3	Erythrosine	Cherry Red	Cherry in Fruit Cocktail and in Canned Fruits for Salad, Baked Good, Confection, Dairy Product, Snack Food
FD&C Yellow No. 5	Tartrazine	Lemon Yellow	Custard, Beverage, Ice Cream, Confections, Preserves, Cereal
FD&C Yellow No.6	Sunset Yellow	Orange	Cereal, Baked Good, Snack Food, Ice Cream, Beverage, Confection, Dessert Powder

○ 7종외 Orange B, Citrus Red No. 2가 있으며 사용시 주의가 필요함
- 한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색소 : Blue No. 1, 2(Indigocarmine)/ Green No. 3/ Red No. 2(Amaranth), 3, 40/ Yellow No.4 (Tartrazine), 5(Sunset Yellow FCF)

○ 한국에서 사용되는 Red No. 2(Amaranth)는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Yellow 5와 6은 한국에서 Yellow No. 4와 No.5로 표기되고 있음.

○ Yellow No. 4를 사용하는 한국식품은 의무적으로 라벨에 색소명을 FD&C Yellow No. 5, Yellow 5 또는 Tartrazine으로 표기해야 함

라. HACCP

□ 배경

○ HACCP는 1960년 초 미국 NASA가 식품회사와 협조하여 우주선에 공급할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임
- full name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1997년 12월부터 미국 FDA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실행을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임.

□ 주요임무

○ 미국 FDA에서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모든 업체들이 자체 내에 HACCP팀을 만들어 FDA에서 권장하는 HACCP플랜을 늘 준수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 업체내의 HACCP팀의 주임무는 아래와 같음.

(1) 각 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품목에 따라 생산과정을 잘 나타내는 도표를 만듬.

• 도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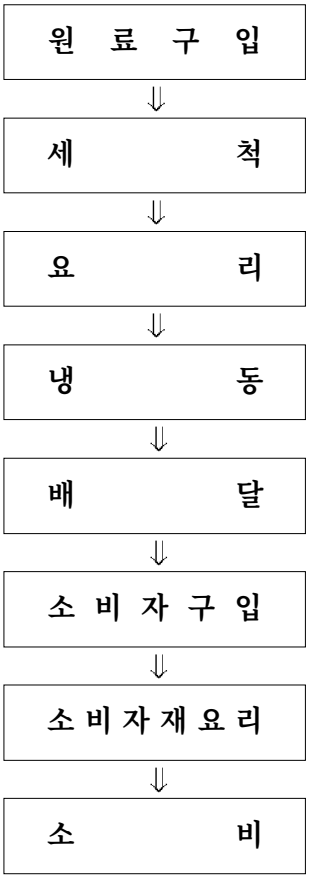

(2) 각 단계마다 위험요소(Hazards)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위험 요소인지를 판단하여 위험 요소 리스트를 작성함.

(3) 각 위험 요소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열거함.

1.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
2. 그 해결책의 담당자가 누구일 것이며 구체적인 해결순서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열거함.
3.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
4.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 스케줄과 담당자
5. 정기 점검에 쓰일 점검방법

6. 담당자가 아닌 제 3자의 재확인 절차

(4) 이러한 플랜이 제 때에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전체 프로그램 점검시기와 점검방법, 점검담당자를 선정한다. 이 전체 점검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 실시되어야 함.

(5) 위에 해당되는 모든 임무는 자세하게 문서화하여 업체 내에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FDA에서는 각 업체들이 HACCP플랜뿐 아니라 그에 관련되는 모든 검사보고서나 자료들을 다 보관하기를 요구함.

(6) 지나간 기록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야 함. HACCP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FDA에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업체는 모든 해당서류를 다 제시할 수 있어야 함.

(7)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서류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 위험 요소(Hazards)의 규정

○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의 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이 분리됨.

• Severe Hazards (극단적인 위험요소)
Clostridium botulinum types A, B, E, and F
Shigella dysenteriae
Salmonella Typhi; paratyphi A, B
Hepatitis A and E
Brucella abortus; B. suis
Vibrio cholerae 01
Vibrio vulnificus
Taenia solium
Trichninella spiralis

• Moderate Hazards : Potentially Extensive Spread
(광범위한 번식이 가능한 중간 위험요소)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Shigella spp.
Enterovirulent Escherichia coli (EEC)
Streptococcus pyogenes
Rotavirus
Norwalk virus group
Entamoeba histolytica
Diphyllobothrium latum
Ascaris lumbricoides
Cryptosporidium parvum

• Moderate Hazards : Limited Spread (번식이 광범위하지 않은 중간위험 요소)

Bacillus cereus
Campylobacter jejuni
Clostridium perfringens
Staphylococcus aureus
Vibrio cholerae, non-01
Vibrio parahaemolyticus
Yersinia enterocolitica
Giardia lamblia
Taenia saginata

○ 위험 요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에는 생산단계마다 결정적 한계 요소를 점검하는 체크 포인트가 설정되어야 함. 이러한 체크 포인트는 생산 품목에 따라 각각 틀리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이룸.

1.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2. 온도

3. 습기
4. Air
5. pH
6. 산성도
7. 방부제
8. 염도
9. 클로린 양
10. Viscosity

□ 수산물 HACCP (Seafood HACCP)

○ FDA에서는 수산물을 특별 조치하기 위하여 Seafood HACCP 규정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수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와 업체에 다 해당됨.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과정이란 소비자가 구입하기 직전까지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므로 범위가 다양함. 그러나 만약 어느 마켓에서 냉동된 해산품이나 통조림으로 된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할 경우 그 마켓은 Seafood HACCP에서 규정하는 생산업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그 마켓에서 냉동된 수산물을 해동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마켓도 생산업체에 해당되어 HACCP규정이 적용됨.

○ 그러나 냉동수산물이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회사에서 소매상으로 배달 판매할 경우는 모든 과정이 HACCP규정에 해당됨. 예를 들면 도매회사 본사에 있는 냉동창고도 냉동운송차도 모두 HACCP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수산물일 경우 거의 모든 보관시설이 HACCP규정에 해당됨.
예를 들어 조개류가 물이 담긴 어항에서 판매될 경우 그 어항도 보관시설에 해당되어 HACCP규정이 적용됨. 이 경우 물의 염도, 온도, 청결

도 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임.

○ 수산물에 해당되는 위험요소들은 첨부된 도표에 품목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FDA에서 몇 몇 국가의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HACCP 플랜 대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조개류에 대한 Molluscan shellfish MOU를 미국 FDA와 교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조개류는 MOU규정을 잘 준수하면 따로 HACCP규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MOU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음.

※ Seafood HACCP 담당기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Office of Seafood, HFS-415
200 C Street, S.W.
Washington, DC 20204
(202) 418-3150

6. 식품표시제도

가. 기본원칙

□ 일반사항

○ 식품표시사항(Label statements)은 주표시면(principle display pannel ; 식품을 구매할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Information pannel ; 주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함

○ 주표시면에는 식품명과 실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정보표시면에는 주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과 영양표시 등과 같은 사항들을 표기함
-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조, 포장,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 제조, 포장, 유통업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 에서 제조한 ’‘ 에서 유통하는 ’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야 함
  - 거리주소 : 회사이름과 주소가 현행 전화번호부나 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도시명, 주명(수입식품일 경우 국가명), 우편번호

□ 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 표기

○ 식품명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표시면의 인쇄 중 가장 큰 것의 1/2 이상의 크기이어야 함

○ 식품이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갖는 경우 이를 식품명으로 사용하며 일반적, 통상적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식품명은 포장의 바닥과 평행하게 쓰여져야 함

- 식품표기는 포장된 식품이 액체가 아닐 경우 ‘ 가늘게 썰어진 것인지(sliced) ’ ‘ 썰지 않은 것인지(unsliced) ’ ‘ 반으로 잘라진 것인지(halves)’ 등의 식품형태를 명시해야 함
- 어떤 신제품이 기존에 있던 식품과 유사하며 기존 식품의 대체재로 사용될 때, 만약 그 신제품이 기존의 것보다 필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함량이 낮다면 신제품에는 ‘ 모방'(imit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 ‘ 모방 ’(imitation)이라는 표기는 식품명과 같은 글자 크기와 선명도로 표시해야 함
- 과일이나 야채의 그림, 맛이나 외관, 라벨표기 등으로 소비자가 주스를 함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료는 주스(과일이나 야채의 천연즙)의 함량을 %로 표기해야 함
- 아래와 같이 향미(flavor)를 위해 소량의 주스가 함유된 음료에는 주스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제품에 ‘ 향미 ’(flavor) 또는 ‘ 향미의 ’(flavored) 라는 용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 주스 ’라는 용어가 원재료명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어떤 방법으로든 주스가 함유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경우
    - 100% 주스로 만들어진 음료의 경우는 ‘ 주스 ’라고 표시할 수 있으나 100% 미만으로 희석된 음료는 음료, 드링크, 칵테일의 의미를 갖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또는 ‘ 희석(diluted) ___주스 ’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

□ 내용물의 실중량(Net Quantity of Contents) 표기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포장재나 용기안에 담겨있는 식품의 양을 가리키는 라벨의 표시 사항임

○ 내용물의 실중량은 별도 항목으로서 주표시면의 밑부분 30% 이내에서 포장의 바닥면과 평행으로 쓰여져야 함

○ 내용물의 중량은 미터법(grams, kilograms, milliliters, liters)과 미국 통상단위법(ounces, pounds, fluid ounces)에 따라 두가지로 표기되어야 함

○ 미터법 표기 위치는 미국 통상 단위법 문구 위치의 앞, 뒤, 위, 아래 모두 가능함
예) Net wt 1 lb 8 oz (680g)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용기나 포장 안의 식품의 실중량만을 포함하며 용기나 포장지, 포장재의 무게는 포함되지 않음. 실중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채운 용기의 평균무게에서 빈포장용기, 뚜껑, 포장지의 평균 무게를 뺄 것.

○ 일반적으로 용기안의 식품에 부가된 물이나 다른 액체는 실중량 표시에 포함됨

□ 원재료명(Ingredient list) 표기

○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이란 식품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를 주된 것부터 내림차순(중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의 순서로 쓰는 방식)으로 나열한 것을 말함

○ 원재료명 목록은 식품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주소 등이 있는 면(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영양표시,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주소의 앞이나 뒤에 표시할 수 있음

○ 원재료명은 규정에 다른 용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사용함.
예) 과학용어인‘ sucrose’ 대신‘ sugar’를 사용함.

○ 허가된 방부제(preservative를 식품에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그 방부제의 일반적 또는 통상적 명칭을 기재하고 아래의 예처럼 방부제의 기능을 명시해야 함

예) ‘ 방부의 ’(preservative), ‘ 부패지연 ’(to retard spoilage), ‘ 곰팡이방지 ’ (mold inhibitor), ‘ 향미보호 ’(to help protect flavor) ‘ 색상 유지증진 ’(to promote color retention)

○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는 원재료명 목록에 특정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기재하거나 ‘ 향신료(spices) ’ ‘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 ‘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 ’라고 표시할 수도 있음

○ 파프리카(Paprica), 튜메린(Tumeric), 샤프론(Saffron) 등 색소로도 사용되는 향신료는 ‘ 파프리카 ’와 같이 실제 이름을 기재하거나 ‘ 향신료와 색소 ’라는 용어로 표시함

○ 인공색소의 표기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 또는 특정 이름을 사용하고 공인되지 않은 색소의 경우 ‘ 인공색소(artificial color) ’라고 표시하거나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사용함

예) 공인된 색소(Certified colors) : ‘ FD&C Red No. 40 ’ 또는‘ Red 40 ’ 비공인된 색소(Non Certified colors) : ‘ caramel coloring ’ 또는‘ beet juice ’

□ 영양분석표(Nutrition labeling)

○ ‘ 94년 5월 8일 이후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New Nutrition label을 의무화 해야 함

○ 다음의 식품들은 영양표시 면제대상이며 *가 표시된 식품들은 영양정보가 제공되거나 강조표시가 된 경우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함

- *소규모로 조제된 식품
-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가정으로 배달되어 바로 먹는 식품
  - *제조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조제식품(요리한 고기, 훈제생선, 소시지, 과자, 사탕류)
  - *인스탄트 커피(plain, 무가당)나 대부분의 향신료 등과 같이 특별

한 영양소가 없는 식품

• 조제분유와 4세 미만의 영아, 유아용 식품(이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는 수정된 라벨규정이 있음)

- 식사 보조용 식품(dietary supplements)
- 의료용 식품(medical foods)
- 소매되기전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큰 단위로 수송되는 식품
- *생식품이나 해산물(자발적으로 겉면에 영양표시를 할 수 있음)
- 주문 가공생선(Custom-processed fish)이나 사냥육(game meat)
- 상자 단위의 계란(영양정보를 뚜껑 안쪽이나 상자 안에 삽입)

•“ 이 포장은 소매판매용이 아님 ”이라고 표시되어 안에 여러 단위의 포장이 되어 있고 밖에 모든 필요한 표시문구가 있는 경우

• Self-service bulk foods : 영양표시는 겉면에 하거나 본래 용기에 잘 보이도록 표시함

• 판매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증정용으로 만든 식품

○ ‘ 영양정보(Nutrition Facts) ’의 표시는 원재료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이름, 주소와 함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 대체면(alternative panel)'에 표시할 수도 있음.

○ 영양정보 표시의 최소 글자크기와 양식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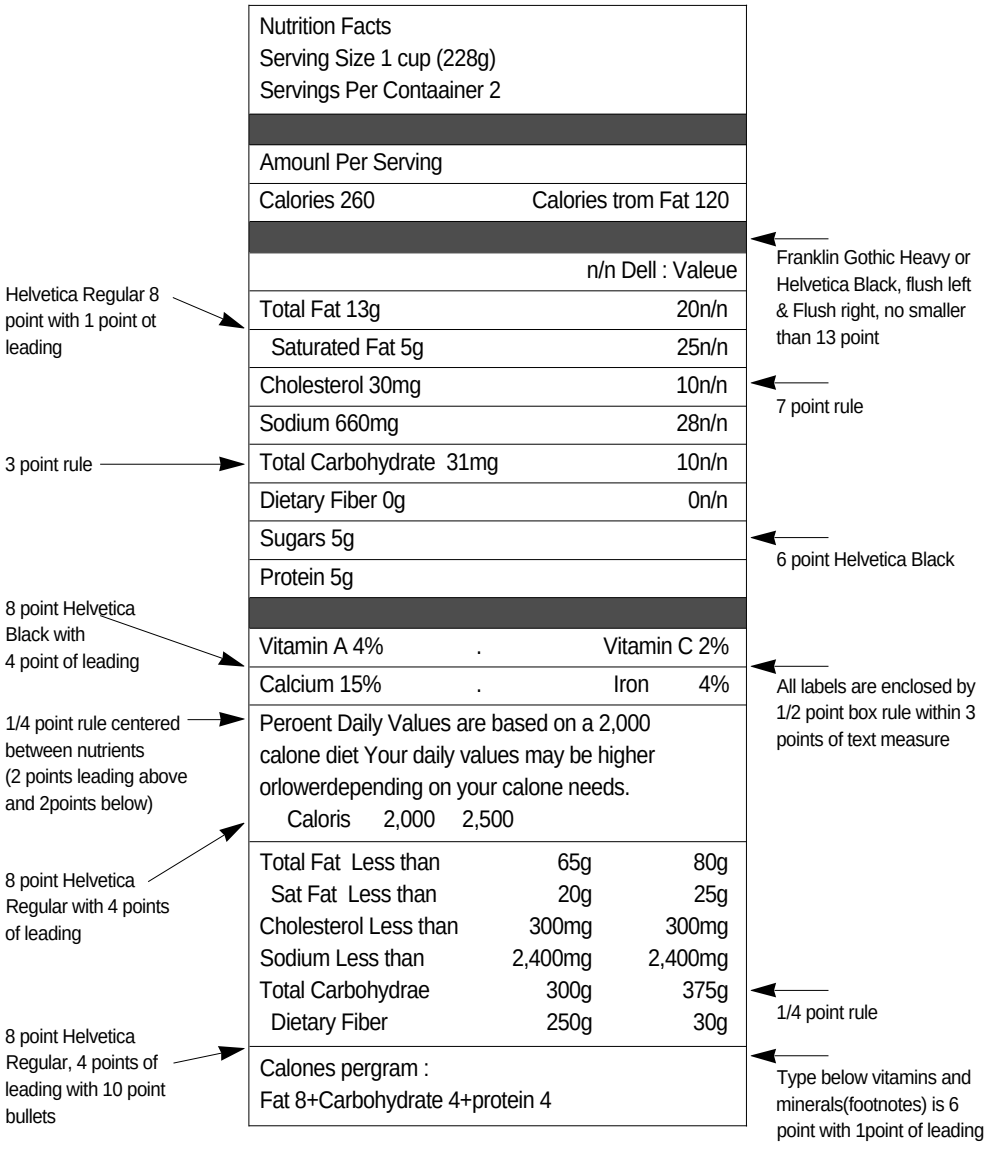

○ 포장이 세로로 공간이 부족해서 위와 같이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로로 표시할 수 있음.

○ 아침식사용 씨리얼이나 낱개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한 포장 안에 여러개의 소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소포장 단위 식품)의 경우에 제조자는 각각의 소포장에 일일이 영양정보 표시를 하거나 한 개의 포장에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신선농산물

□ 예외조항

○ 식품표시제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나

○ 원재료명 표기 :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므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영양분석표 : 영양분석표 면제 대상으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 권장함

□ 등급표기

○ 등급표기는 식품표시제도를 주관하는 FDA관할 사항이 아니며, 미 농무부 산하 농산물마케팅국(AMS)에서 관장

○ AMS에서 지정한 2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산 및 수입산 모두 AMS의 등급규정(US No.1, 2...)에 맞게 구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지정 품목외는 자발적으로 표시하면 됨

다. 건강보조식품

□ 관련법규

○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DSHEA)

○ DSHEA에 근거한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규정은 1997년 9월 23일 입안되어 1999년 3월 23일부터 효력 발생
- 현재 미국내 유통 인삼제품의 대부분이 건강보조식품의 범주

□ 라벨링 요구조건

○ 성분진술(Statement of Identity) : 예,“ ginseng”

○ 순중량(Net quantity) : 예,“ 60 capsules ”

○ 구조-기능 주장 및 진술(Structure-function claim and statement) : 예,“ This statement has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 복용법(Direction for use) : 예,“ Take one capsule daily. ”

○ Supplement Facts panel : 일반식품의 영양분석표와 유사한 것으로 일회분 용량, 활성성분 함량 등이 기재

○ 성분 명세 : 일반명으로 함량이 많은 것에서 작은 것의 순

○ 제조업체나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이름 및 주소

○ 라벨에 “ dietary supplement ”라는 말을 인쇄

라. 식품라벨 표시요건 강화내용

FDA의 식품라벨 표시관련 개정 법규정하에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식품라벨 표기요건 강화조치

< 전이지방 함량 표시제 >

□ 배경

○ 전이지방(Trans Fat)이란?

- 전이지방은 주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유지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고체 형태의 포화지방산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

거나, 음식물을 기름에 튀길 때 형성되는 지방의 한 종류

- 전이지방이 다량 함유된 식품은 마가린; 버터나 마가린을 많이 넣은 빵, 파이, 쿠키, 케 등; 피자, 팝콘, 토스트, 튀김류 등

○ 전이지방의 역할

- FDA는 미국인의 하루 평균 전이지방 섭취량은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섭취 칼로리의 2.6% 또는 약 5.8 그램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전이지방은 몸에 해로운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몸에 유익한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함으로써 특히 심혈관계질환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전이지방 함량 표시제를 실시하게 됨

□ 법적 근거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FD&C Act). Chapter IV-Food Section 403 (4) (21.USC 343 (9))

- Amendments to FD&C Act Nutrition Labeling & Education Act of 1990
- FDA Regulations Part 101 (21 CFR Part 101)

□ 표기 방법

○ 식품공급자가 영양정보 표시란(Nutrition Facts)에 전이지방 함량을 별도로 표시해야 함

- 전체지방함량(Total Fat)하에 포화지방(Saturated Fat), 전이지방(Trans Fat)을 표시하고, 별도로 콜레스테롤 함량 표기

○ 식품에서 전체 지방 함량이 0.5 그램 이하인 경우 전이지방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 footnote’에서 “ not a significanr source of transfat”이라고 명기

○ 전이지방에는 함량(그램) 표시만 있을 뿐 “%DailyValue(%DV)” 즉 일일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전이지방과 만성심장병의 발병 위험증가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FDA가 전이지방 권장량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 전이지방 표기 영양분석표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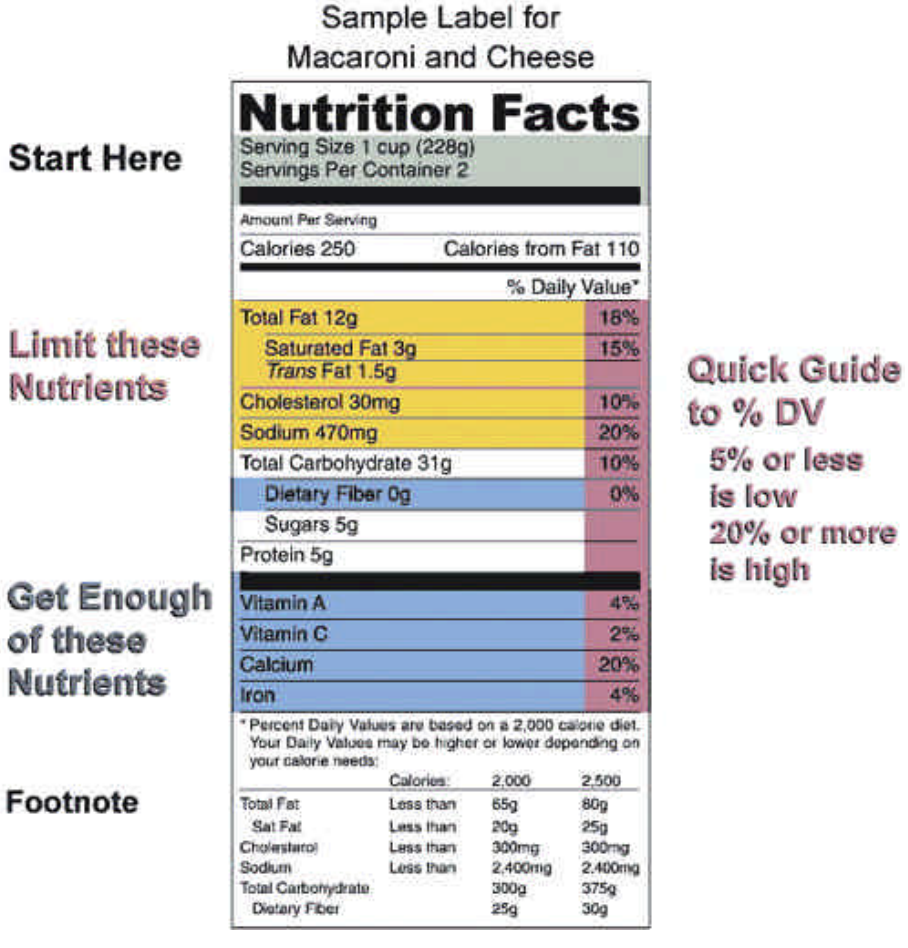

<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성분표시제 >

□ 법적 근거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FD&C Act). Chapter IV-Food Section 403 (w) (21USC 343 (w))

- Amendments to FD&C Act Food Allergen Labeling & Consumer Protection Act(FALCPA) of 2004
- FDA Regulations Part 101 Food Labeling (21 CFR Part 101)

□ 표시방법

○ 알레르기 유발식품에서 추출된 알레르기 항원 단백질을 함유하는 식품 원료로 제조된 식품인 경우, 식품 라벨의 성분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존재 표시를 의무화한다.

○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첫 번째 방법 : 식품명을 적은 후 괄호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일반명을 기재

  예) Ingredients: Enriched Flour (Wheat flour, malted barley, reduced iron, folic acid), Sugar, Partially hydrogenated soybean oil, whey (milk), eggs, vanilla, lecithin (soy).

- 두 번째 방법 : 성분 리스트를 적은 후 "cont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

  예) Ingredients: Contains wheat, milk, and soy.

□ Questions and Answers

Q : FALCPA 발효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라벨 부착 제품은 팔 수 없는가?

A : 아니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요구하지 않는다.

Q :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

A : FALCPA에 의해 지정된 8개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우유(milk), 달걀(egg), 밀(wheat), 땅콩(peanuts), 대두(soybeans)의 5개 식품과 생선류(fish), 갑각류(Crustacean shellfish), 견과류(tree nuts)의 3개 식품군이다.

Q : 생선류, 갑각류, 견과류의 3개 식품군에 대해 특정 식품명을 적어야 하나?

A : 그렇다. 특정 식품명을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함유한 성분이 견과류의 경우 almonds, pecans, walnuts인지, 갑각류의 경우 crab, lobster, shrimp인지, 생선류의 경우 bass, flounder, cod인지 명시해야 한다.

Q : FALCPA의 적용을 받는 식품 유형은?

A : 국내산 및 수입산을 포함,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의 대상이 되는 미국내 판매 모든 포장식품에 적용된다. FDA는 육류, 가금류, 난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을 관할한다.

Q : 신선 과채류도 적용이 되는가?

A : 아니다. 신선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농산품은 FALCP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 FALCPA는 미 농무부 관장 품목인 육류, 가금류, 난류의 포장제품의 라벨링에 적용되는가?

A : 아니다. FALCPA는 FDA 관장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Q : “soybean”, “soy”, “soya”라는 용어가 “soybeans”와 동의어로 간주되는가?

A : 그렇다. “soybean”, “soy, ”“soya”는 모두 통용되는 “soybeans”의 일반명으로 알러지 성분을 규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peanut”과 “peanuts”와 같이 복수 형태도 허용된다.

Q : FALCPA 규정 미준수시 벌금이 부과되나?

A : 그렇다. 민사상의 제재나 형사상 벌금, 또는 양쪽 다 부과될 수 있으며 억류 또는 리콜 조치도 가능하다.

7. 미국의 관세제도

가. 개요

○ 미국 관세제도의 근거법령은‘ 30년 관세법 402조(Tariff Act of 1930. Sec. 402)와 ’79년 무역협정법 제2장(TitleⅡ of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세칙은 CFR 19편 152장에 규정되어 있음

○ 미 관세청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표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로 매년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을 표시하고 있음

나. 관세평가 제도

□ 평가방법

○ 미 세관은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며 부과고지 방식은 채택하지 않음 (수입자가 신고전에 과세가격을 평가, 산정하여 신고함)

○ 관세액 산출 : 수입자가 신고한 관세부과 기준액 × 관세율 (관세예치금을 받아 6개월 1년 후에 정산하는 제도임)

○ 과세 환율의 적용기준

- 뉴욕연방 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 공인한 환율을 사용
- 외화의 환율은 5% 이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분기 내내 적용됨
-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 외화에 대해서는 세관의 요청이 있을때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환율을 공인해 줌

□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평가 방법

○ 미국의 관세는 물품의 관세부과 기준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때 관세부과 기준액은 수입품의 수입구매자(Domestic Purchaser)가 수출판매자(Foreign Seller)에게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적용함

○ 거래가격 : 수출항구에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까지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및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직·간접의 비용을 추가하고 일정비용을 공제하므로 실거래가격은 FOB 수출항구가격과 일치하지는 않음

※ 거래가격 = (물품선적 직접비용 + 수입품으로서의 직·간접 비용) - 일정비용

○ 관세부과액 가산요소

-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불한 포장비 및 판매수수료
- 각종 생산지원비용
- 수입물품의 대미국 수출판매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을 요구받은 금액, 그리고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얄티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수익

○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요소

- 수입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보험료
- 미국 도착후 발생되는 모든 경비
- 미국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및 기타 연방세

[참 고]

① 거래가격의 제한사항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거래상에 다

음과 같은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입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거래로 다음사항은 예외
- 법률이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제한
- 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을 국한 하는 제한
-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 수입물품의 판매 또는 가격이 특정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물품 수입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업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특수관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형제와 자매(이복 포함), 배우자, 존속및 직계비속을 포함한 동일가족의 구성원
- 기관의 임직원및 당해기관
  • 각 개인이 타기관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에 당해 기관의 임직원과 타 기관의 임직원
- 동업자
- 고용자와 피 고용자
  • 어떤 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지분의 5% 또는 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및 당해기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떤자를 통제하거나 그에 의하여 통제 당하거나 또는 공동 통제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물품의 판매상황을 조사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특수관계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있음

- 미국내의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판매시 거래가격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공제가격 또는 산정가격

② 공제요소

다음의 요소는 수입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됨

○ 수수료 및 중개료
- 반드시 에이전트 계약이 성립된 계약서가 증빙되어야 함
- 미 세관에서는 L/C상의 거래금액에 수수료가 합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로 인정하여 과세하며, 수수료는 보통 5 ~ 7%를 인정하나 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해야 함

○ 운임, 보험료
- CIF 가격으로 수입했을 경우 국제운송및 보험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됨
- 특히 수출자가 자신의 창고로 부터 수출항까지 내륙운송을 한 경우 내륙 운송료는 물품가격에서 공제됨

③ 가산요소

다음의 요소는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때 가산 하게 되며 정확한 비용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함

○ 포장비용
-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포장 재료비, 인건비, 컨테이너 등에 대한 각종의 비용

○ 판매수수료
- 수입품 제조업자 혹은 수출판매자를 위하여 일하거나 지휘를 받는 특수 관계에 있는 수출판매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 생산지원 비용

- 미국으로 수출될 수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도구 및 금형이나 수입품의 생산을 위해 소비된 물품과 기타 유사한 재료의 구입에 대한 지원비용
- 단, 엔지니어링, 개발, 디자인, 그리고 설계 및 스케치 등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생산지원에 속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생산지원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음
  - · 용역 또는 작업이 미국내 거주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 용역 또는 작업이 수입물품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대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 용역 또는 작업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른 용역 또는 작업에 부속된 경우

※ 생산 지원비용의 결정

- 지원물품 또는 용역을 수입자가 비관련 판매자로 부터 획득할 경우에는 그 획득비용
- 지원물품 또는 용역을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된 자에 의해 생산될 경우에는 그 지원비용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지원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와 사용, 수리, 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됨

④ 로얄티에 대한 관세부과

○ 지불해야 하는 로얄티및 라이센스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생산, 수출 가격에 로얄티가 포함된 경우는 당연히 과세가격에 포함됨

○ 일정기간 단위로 로얄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별 생산, 수출량을 추산해서 원가배분후 과세가격에 반영함

□ 거래가격 이외의 관세 평가방법

○ 적용 우선순위

- 관세평가에 있어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2차적인 가격들이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적용됨
- 동일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산정가격(Computed value)

○ 반입 서류제출시 수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공제가격보다 산정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거래가격이 위의 2차적인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자가 거래가격 대신 위의 2차적인 가격을 선택 할 수도 있음

① 동일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동일물품 : 평가 대상물품과 모든점에서 동일하고 동일국 및 동일인 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의미함

○ 유사물품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미함

-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국 및 동일인에 의하여 생산
- 특징, 구성요소, 재료 등이 평가대상물품과 유사

○ 만일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 발견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물품과 동일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동일인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타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동일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산정시 세관의 고려 사항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일자와 거의 동일한 시기이어야 함
- 당해 수입물품의 상업적 수준및 거래량이 거의 동일 수준이어야 함

②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동일·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함

○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물품이 수입된 후 미국내의 판매가격에서 개당 단위가격을 계산한 후 특정요소를 가산 및 조정하여 결정하는 가격

○ 단위가격의 계산기준 및 방법

-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에서 판매되어야 하며
- 수입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본으로 함

○ 공제 항목

- 수출국에 상관없이 관련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인 수입물품의 미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하게되는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한 부가금.
- 관련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국제운송과 관련된 운송 및 보험료의 실제비용과 관련비용
- 미국내에서 운반에 소요된 운송및 보험료와 관련비용
- 수입으로 인한 실행관세 및 연방물품세등 연방소세
- 물품의 수입후 가공으로 부가된 가격

③ 산정가격(Computed Value)

○ 공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산정가격(Computed Value)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지만 그 실시사례가 매우 드뭄

○ 산정가격(Computed Value)의 비용 구성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비, 제조 및 기타 가공비용

- 수입물품과 동류인 물품의 판매에 의한 이윤및 일반 경비

□ 기타 평가방법

○ 수입물품의 가격이 위의 방법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없을시 에는 다른 여러가지의 수단을 강구하여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과 같이 산정하는 것은 배제됨
-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미국내 판매가격
- 두가지 대안 가격중 최고가격을 평가의 기초로 삼는 제도
- 수출국의 국내 시장물품 가격
-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산정가격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 이외의 생산비
- 미국 이외의 국가에 수출할 물품의 가격
- 최저 평가가격
- 임의가격 또는 가공가격

□ 특수형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평가

○ 여행자 휴대품
- 미국은 이삿짐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용품으로 인정하여 액수에 관계없이 면세하고 있음
- 여행자의 경우는 휴대품이 $400이내이면 무관세이나 그 이상이면 육안을 통해 과세하게 됨
- 여행자 휴대품 일지라도 의류의 경우 동종물품이 3개 이상이면 상업적 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며, 과세가격은 영수증 금액에 기준함

○ 중고물품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대부분 육안으로 판단하여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

○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통관전에 발견된 변질 또는 손상은 무조건 인정되어 일정률을 공제받으며 이 경우 세관 인정하에 물품을 파기하며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됨
- 통관후에 발견된 변질 또는 손상에 대해서도 해당 물품을 파기하고 관세환급을 받게 되는데 해당 물품의 파기시에는 세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변질이나 손상의 사실에 대해서는 고객의 항의서한, 교환요구 등의 자료를 물증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임차 수입물품

- 임차 수입물품은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됨
-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TIB) 방식 : 관세유예제도로서 1년씩 2회 연장, 총 3년까지 관세납부를 유예하나 3년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2배 중과함
- 사전관세 납부방식 : 사전에 관세를 납부하고 임차 수입물품을 반납하면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게 됨

○ 재고상품 등의 처리

- 재고상품이나 짜투리상품, 일부 하자발생 물품 등에 관해 미 세관은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재고상품을 값싸게 구입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이것을 서류상에 명시하면 재고상품에 대한 특별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 기타 관세관련 참고 사항

□ 미국 세관의 중앙 평가전문관(National Import Specialist)제도

○ 미 관세청은 관세평가 등에 관한 법적문제의 결정이나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를 위해 중앙평가 전문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이는 고참 세관원을 중심으로 주로 상품분야의 권위자 50여명을 뉴욕

에 상주시키면서 활용하는 제도임

○ 이들 전문관은 미국 전역의 300여개 세관의 평가 전문요원들에게 관세평가에 대해 자문을 하는 한편 관세청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법률적인 해석에 공식적인 의견제시및 상품의 기술적인 면에 관한 자문 등)

□ 관세율표 용어해설

○ Base Rate of Duty

가장 최근의 WTO 협정에 근거하여 이 관세율표의 적용시작 기간 및 초기세율을 의미함(미국에서는‘ 95년부터 적용기간이 시작됨)

○ Bound Rate of Duty

관세율의 최종비율을 의미하며, 미국은 관세율의 적용기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저 개발국을 한 부류로, 그 이외 모든 국가들을 한 부류로 구분함)

이 구분에 의하면 저개발국들을 상대로 하는 적용기간은 10년이고 그 이외 국가들에 대한 적용기간은 6년이며, 적용기간에 따라 해마다 관세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관세율표에는 연도수를 표기하지 않음

한국의 농림수산물의 경우 Bound Rate이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Ad Valorem(%) ; 종가세

관세율이 총 수입가의 일정비율(%)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Ad Valorem이 15%인 경우 총 수입품가격(아무런 관세나 다른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물품의 가치만 산정한 가격)의 15%를 관세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냄. 예를 들면, 1만불어치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그 품목의 Ad Valorem이 15%이라면 1,500불을 관세로 지불할 계획을 세워야 함

○ Other

품목에 따라 관세를 무게당 일정액을 적용하며, 이때 Ad Valorem 대

신 이 항목에 Kg당, 또는 g당 액수로 자세히 표기되어 있음

○ U/B

Unbound 또는 Bound 의 표기로, 품목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Unbound system이 있을 수가 있음

Unbound system이 적용될 경우, 미국은 관세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음(‘ 99년 현재로 미국은 모든 농림수산물의 경우 Bound System을 사용하고 있음)

○ Implementation Period From/To

관세율 적용의 시작기간과 최종기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995년에 시작, 2000년까지 유효하며, 2001년부터 차기 WTO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최종비율이 적용됨

□ 미국 관세율표 보는 요령

○ 개 요

-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그 원산국에 따라 최혜국세율, 법정세율, LDDC(Least Developed Developing Countries)세율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됨

○ 미국의 관세는 물품의 관세부과 기준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때 관세부과 기준액은 수입구매자가 수출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적용함

- 거래가격은 당해 수입품이 미국에의 수출을 위해 판매되었을 때에 실제로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가격에 수출을 위한 포장비, 판매수수료, 로열티 등을 합한 것인데, 관계자간 거래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FOB 베이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관세율표 보는 방법

- 미국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column 1(General, Special)과 column 2로 구분하여 관세를 달리 부과함

- Rate of Duty Column 1 : Special에 해당되는 품목은 General 보다 우선하여 적용
  - General : 최혜국지위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하여 적용
  - Special :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적용
  - 일반특혜관세(GSP) 대상품목 : A, A* 또는 A+로 표기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국 : CA(캐나다), MX(멕시코)
  - 캐리비안연안 국가 : E 또는 E*
  -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 IL
  - 안데스지역특혜교역법(ATPA) : J 또는 J*

○ Rate of Duty Column 2 : 적대국에 대하여 적용
- 대상국가 : 아프카니스탄, 라오스, 베트남, 쿠바, 북한

8. 수입규제 제도와 운영

가. 수입제한

○ 미국정부는 크게 다음과 같이 크게 2종으로 분류되는 식품에 대해 수입을 거부하고 있음

- 불량(Adulterated) 식품 : 불량품, 비위생적인 식품, 불결하다고 판정되는 식품, 또는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인 식품들을 포함
- 부정표시(Misbranded) 식품 :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영양분석표가 부착된 식품, 과장된 내용의 식품설명서나 포장이 된 식품들을 포함

○ 미국정부는 또한 위생검사에 연관된 문서들이 미흡한 식품이나 제조업체의 검사, 검역이 불가능한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참고자료(FDA 발간자료)
  " Laws & Regulations Enforced by the U.S. Food and Durg Administration"

○ 농림수산물의 경우, 미국정부는 품목에 따라 특정국가를 상대로 수입할당제(Quota)를 실시하고 있고, 어떠한 품목들은 수입국에 상관없이 총수입량에만 수입할당제를 정해 놓고 있음

- 이러한 수입할당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확인절차가 필요
- 최근 우리 농림수산물의 대미 수출동향과 할당(Quota)량은" U.S. Imports of Agricultural, Fish & Forestry Products from Korea, CY 1998-2002 and Year-to-date Comparisons"에 상세히 나타나 있음

나. 비관세 장벽 및 조치

□ 우리 농수산물의 대미수출에 적용될 수 있는 비관세 장벽및 비관세 조치는 크게 나누어 아래와 같은 6개의 분야로 분류됨

1) 잠정적 장애요소
2) 구조적 장애요소
3) 문서 요건
4) 영양분석표
5) 식품위생기준
6) 관세외 추가세 및 추가비용

1) 잠정적 장애요소

○ 우리 농림수산물의 대미수출에 장벽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요인으로는 미연방정부 통상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unilateralism(일방주의)"임

○ unilateralism 정책에 의해 책정된 조항으로 흔히 "수퍼 301조"로 일컬어지는 "Section 301 Trade Act of the 1974 --Amend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와 같은 조항들이 있음

○ 미국의 unilateralism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1) 미국은 모든 외국 또는 외국회사에 대해 sanction과 같은 통상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2) 통상규제 조치의 근거는 미국 정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이유를 근거로 삼을 수 있음. 따라서 국제무역이나 수출대상 물품의 제조 방식이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이유에 의해서라도 미국정부에서만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통상규제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한국 내의 정치적 상황도 이러한 통상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

(3) 미국은 이러한 unilateralism 정책을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제조약이나 국제계약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시,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WTO 에서 인정된 사항이라도 미 정부에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4) 미국의 unilateralism 정책은 반드시 국가가 아니라 특정 기업을 상대로 적용될 수도 있음

(5) 미국정부에서 이 unilateralism 정책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 국가나 기업을 위반 국가나 기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함. 이 정책의 적용 근거나 그 근거에 부합되는 조치에는 분명하게 명시된 법규가 따로 없으며 당시의 사례에 따라 조치내용이 결정됨

(6) Unilateralism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실시됨

- 미 통상대표부 대표(USTR)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회사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
- 조사결과와 건의된 조치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보고서를 USTR이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른 대통령령을 내림

(7) 미국 국내산업 로비회사들이나 연방의회는“ 수퍼 301조 ”와 같은 unilateralism에 근거한 통상규제조치를 취하자는 압력을 항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8) 이러한 압력을 늘 받고 있는 USTR이나 백악관은 그때 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unilateralism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 정책은 무엇보다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임

2) 구조적 장애요소

○ 미국은 철저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시정부과 같은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큼

-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를 모두 포함하면 2,7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러한 각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에 들어오는 농림수산물을

검사, 규제할 권한이 있음

○ 예를 들면, 연방정부에서 통과시킨 농산물도 주정부에서 독자적인 이유로 수입을 거부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 농림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 후, 미국내의 어느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인지 목표시장을 확실히 결정하고, 그 지역을 관장하는 모든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문서나 법적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NSSP(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프로그램
- 굴, 조개류 등에 적용되는 이 프로그램은 외국과 미국의 MOU 체결에 가입이 되며, 가입된 국가의 지정된 업체가 ICSSL(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s List)에 가입하여 미국과 국제간 주(state)간 통상을 할 수 있음
- 현재 한국은 가입되어 있고, 한국내 7개 업체가 동록됨

3) 문서 요건(documents requirement)

○ 농림수산물일 경우, 요구되는 문서들이 특별히 많으며, 다른 품목보다도 농림수산물은 검사와 규제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다양하기 때문임

○ 또 한가지 혼란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문서요건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예를 들어 똑같은 식품위생 내용을 담은 문서라도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양식과 성격이 틀릴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문서요건들이 모든 농림수산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품목에 따라서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은 물론 관세청 또는 각 지방정부기관들이 각자 모두 특별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의 분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질 수 있음

○ 이렇게 방대한 서류의 분량과 종류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농수산물 수출을 어렵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영양분석표(Labelling)

○ ‘90년 부터 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에 의해 시작된 조치로서 미국내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류들에는 상세한 영양분석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 조치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에 두 가지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 주정부에 따라서는 연방식품의약국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영양분석표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별요구사항은 지방정부에 따라 또한 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특별한 조사가 요구됨

- 예를 들면, 어떤 지방정부는 FDA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세분된 영양분석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식품제조과정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 미정부에서는 영양분석표가 미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 3자 검사기관(즉, 식품제조회사와는 관계없는 기관)에서 작성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요구하며, 이 증빙서가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미 정부에서는 문제의 식품을 다시 시험하고 새로운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얼마든지 반복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가공식품일 경우 수출전 미국내에서 허가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검사기관들은 주로 미국내에 있음) 식품검사와 영양분석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미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5) 식품위생기준(Sanitary and Phytosanitary Requirements)

○ 수입시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까다롭고 복잡함.

특히 해충(Insect pest) 에 관한 검사기준은 아래와 같이 불분명하고 광범위하므로, 이에 대한 수출전 검사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함

○“ 미국내 생존하지 않는 해충이나 또는 미국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은 해충 ”을 포함하는 농림수산물은 미국수입이 금지됨(Code of Federal Regulations of 1996)

○ 해충검사외에 다른 까다로운 위생검사기준의 예로는 유럽연방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복숭아통조림 사례가 있음

- 이 통조림들은 유럽연방(EU -European Union)위생, 안전 검사기준을 통과한 제품인데 미국 FDA 에서는 통조림안에 작은 복숭아씨 조각들이 있다고 하여 수입을 금지시켰음(보통 시각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크기이지만 잘 못 삼킬 경우 사람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적용됨)

6) 추가세 및 추가비용(Levies and Charges)

○ 미국은 수입품목에 대해 여러 가지 사용자 비용을 부담 시키고 있음. 대부분의 사용자 비용은 금액이 미소하므로 큰 장애는 아니나, 아래의 두 가지 사용자 비용은 금액이 다소 커질 수도 있으므로 수출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물품절차비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이 MPF 가 적용됨

‘ 99년 현재 MPF금액을 총 물품가치의 0.21%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앞으로 언제라도 미관세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상이 가능함 (현재의 비율로 계산할 때 1000불어치 수출품에 21불(최소한계치 $25)을 MPF비용으로 추가 지불해야 함)

MPF 비용의 최고 한계치는 $485으로서 아무리 수출물량이 많아도 $485 이상은 추가되지 않음(이 계산방법은 대규모 수출기업에는 유

리하나 소규모 수출업체에는 불리함)

- 항구관리세(HMT-Harbor Maintenance Tax) : 선박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미국관세청은 항구관리세(HMT)를 적용하고 있음

‘ 99년 현재 HMT 금액은 총 수입가격의 0.125%이며, HMT는 최고 한계치가 없어서 수출량이 많을 경우 HMT 금액이 꽤 높아질 수도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수입품에만

○ 이러한 추가세 및 추가비용을 관세청 통과 당시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관세청은 세관통과를 보류할 수도 있으므로 MPF나 HMT등을 미리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바이오 테러리즘법

□ 배경

○ 2001년 9. 11. 테러 이후 식품공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미 의회는 ‘ 공공보건과 바이오테러 대응법률 ’을 통과시켰고, 2002년 6월 12일 대통령이 서명함.

○ 동 법률은 5가지 Title로 되어 있고, 바이오 테러의 Title III의 Subtitle A(식품공급의 보호)와 관련된 4개의 세부규칙안에 대한 내용임

- 305조(식품업체등록), 307조(수입식품 선적의 사전통보)
- 303조(행정적 억류조치), 306조(기록작성 및 유지)

□ 내용

1) 제 303조: 억류조치 (Section 303: Administrative detention)

a. 법률현황 : **시행령 초안 (Proposed rule of regulation)**

b. 개요

○ 식품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또는 사망케 하는 위협을 야기시킨다고 믿을만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FDA는 그 식품을 억류할 권한이 있음

○ 억류명령을 받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 (Perishable food) 의 신속집행 조치

○ 위해식품의 억류방법과 억류명령의 이의제기절차

c. 세부 내용 (질의응답 Questions & Answers)

○ 억류대상식품: 식품, 의약품과 화장품에 관한 법률 (Food, drug & cosmetic Act)이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모든 식품

○ 부패하기 쉬운 식품 (Perishable Food): 상온상태에서 7일 이상 보관할 때 품질이 변질되는 식품으로서 이런 변질을 막기 위한 특별한 보존조치를 하지 않고, 열처리 가공하지 않고, 그리고 냉동처리하지 않은 식품

○ 억류명령의 요건: 식품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사망케 하는 위협을 야기시킨다고 믿을만한 증거나 자료를 식품의 검사 및 조사를 통해서 입수했을 경우

○ 억류명령의 승인자: 억류된 식품을 관할하는 FDA의 지역사무소장 혹은 직속상사

○ 억류명령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 억류명령번호, 명령서발부의 날짜와 시간, 억류된 식품의 명시, 억류기관, 억류이유설명, 억류보관장소, 적정한 보관 및 수송조건

○ 억류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억류된 식품의 보관조건: 억류된 식품을 안전한 시설로 옮겨 적정하게 보관

○ 억류된 식품의 이송(Transfer): 억류기간이 소멸되거나, 반출허가조치가 결정될 때까지는 억류된 식품을 이동시킬 수 없음

○ **억류된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압수조치절차의 신속화: 억류된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압수조치 할때 FDA는 억류명령이 발부된 후 4일 이내에 압수건의를 법무성에 보내도록 규정함**

○ **억류명령서의 수령자: 원칙적으로 억류명령서는 식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관장하고 있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부된다. 그러나 식품의 소유자가 식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관장하고 있는 소유자, 운영자, 또 대리인과 다를 때는 억류명령서의 사본을 식품의 소유자에게도 전달하도록 규정함**

○ **억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억류된 식품의 권리자는 억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하여는 억류명령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기타식품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이의제기의사를 밝히고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함. FDA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억류명령을 확정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해야한다.**

○ **시행령초안의 세부조항: FDA / Website: http://www.fda.gov/oc/bioterrorism/biozct.html을 접속하여 얻을 수 있음.**

2) 제 305조: 식품시설의 등록(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a. 법률현황 : **시행령의 잠정적 최종안(Interim final rule of regulation)**

b. 개요

○ **미국내의 인간과 동물의 소비를 위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혹은 보관하는 국내시설과 외국시설을 2003년 12월 12일까지 FDA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제 305조 식품시설의 등록에 관한 시행령의 잠정적 최종안이 2003년 10월 10일자에 발표되었음**

○ **이 시행령의 취지는 잠재적 혹은 실제적 생체테러사태나 식품이 매개하**

는 질병발생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FDA로 하여금 식품시설의 등록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비상사태의 출처와 원인을 파악케 하고 그 내용을 관련식품시설에 신속히 통보하게 하는데 있다.

c. 세부내용(질의응답 Questions & Answer)

○ 등록대상시설: 미국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소비를 위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혹은 보관하는 국내시설 혹은 외국시설을 관장하는 소유주, 운영자 혹은 대리인, 외국시설인 경우는 미국 내에서 살고있거나 사업을 하고있는 미국인 대리인을 지정해서 등록을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수입자 혹은 대리인)

○ 등록면제시설: 개인가정, 농장, 음식점, 소매식품업체, 비영리급식업체, 생산식품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고기잡이배, 미국 농무성이 시설전반에 걸쳐서 배타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시설

○ 등록회수: 각 식품시설의 등록은 한번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등록된 자료가 변경되면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 등록비용: 없음

○ 등록번호의 의미: 식품시설의 소유주가 등록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했다는 의미이고, FDA가 등록된 시설이나 그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을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 등록방법: 첫째는 Form 357을 사용하여 우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등록으로 2003년 10월 16일부터 하루 24시간, 1주일 7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Website 주소인 www.fda.gov/furs에 접속하여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화면에 해당정보가 다 기입되는 즉시 등록확정과 등록번호가 주어짐.

○ 등록시 요구되는 자료: 시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시설을 관장하는 소유주, 운영자, 혹은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시설의 모든 상호, 해당식품 분류 (21 CFR 174.3), 제출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보증진술, 시설을 관장하는 소유주, 운영자 혹은 대리인이 아

닌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데 위임 권을 가지고 있다는 보증진술, 외국시설의 미국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외국시설의 미국인 대리인의 비상연락 전화번호, 국내시설의 비상연락 전화번호

○ **등록자료의 공개여부: 등록시 제출된 모든 자료는 정보자유화법에(FOIA) 의거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 **등록자료의 변경이 발생할 때: 변경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갱신을 해야한다.**

○ **등록시설이 폐업될 때: Form 3537.a 를 사용하여 변경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취소신청을 해야하고 신 소유주는 Form 3537을 사용하여 그 시설을 재등록신청을 해야한다.**

○ **2003년 12월 12일까지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자료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등록갱신을 신청하지 안 할 경우 혹은 등록취소신청을 안할경우: 동 법규정은 상기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만일 등록하지 않은 외국시설로부터 수입된 식품은 FDA나 Customs으로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수출함에 억류조치를 받는다.**

3) 제 306조: 기록의 확립과 유지 (Establishment & Maintenance of Records)

a. 법률현황 : **시행령 초안 (Proposed rule of regulation)**

b. 개요

○ **기록유지를 요구하는 목적은 테러에 의한 식품오염 등 비상사태 발생시 FDA가 문제식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식품제조자(Manufacturers), 가공처리자(Processors), 포장업자(Packers), 판매업자(Distributors), 수령자(Receivers), 보관자(Holder), 수입자가 식품을 전달받은자(Immediate source from**

which they received food)와, 식품을 직접 전달받은자 (Immediate subsequent recipient)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업체들이 선호하는 어떤 형태(서면 또는 편지)로든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기존 기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c. 세부내용 (질의응답 Questions & Answer)

○ 운송자를 제외한 식품업자는

(a) 그들이 식품을 직접 전달한 자 및 그들 자신이 식품을 직접 전달한 업체와 명칭과 동 업체의 책임자명

(b) 동인의 주소,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있을 경우)

(c) 식품의 종류, 제품명, 기타 세부사항

(d) 수령 또는 전달일자

(e) 제조번호 또는 기타 식별번호 (있을 경우)

(f) 수량 및 포장상태

(g) 운송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타 팩스 및 이메일 주소 (있을경우)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운송자에게도 유사한 기록유지가 요구됨)

○ 특정식품이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고 사람, 동물 등 건강에 유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FDA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업무시간 중에는 4시간 이내에, 기타 시간에는 8시간 이내에 관련기록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농장, 식당, 가공처리를 하지 않는 어선, 농무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록유지 요구사항이 면제됨. 면제뒤 일부 예외가 있으나 외국업체들 중 업체의 식품이 미국 이외지역에서 추가로 가공처리, 포장될 경우 기록유지 의무에서 제외됨

○ 동 법규정은 기록의 확립과 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

하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민사상 혹은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최종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개월 후(500인 미만 업체응 12개월 후, 10인 이하 영세업체는 18개월 후)에 발효토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규칙안은 FDA 웹사이트 http://wwwfda.gov/oc/bioterrorism/bioact.htm 에 게재되어 있으며, 동 사이트에 의견제출 창고도 개설되어 있음.**

4) 제 307조: 수입식품의 사전통보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

a. 법률 현황 : **시행령의 잠정적 최종안(Interim final rule of regulation)**

b. 개요

FDA는 세관과 협력하여 2003년 12월 12일부터 수입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식품의 사전통보자료를 직접 제출받아서 분석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하고,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하고자 함.

c. 주요내용 (질의응답 Questions & Answer)

○ **사전통보의 제출시기: 사전통보는 수입식품이 도착하기 전 최장 5일 이내와 수송수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최단시간 이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 육상도로운송인 경우는 도착전 2시간

(2) 육상철도운송 혹은 항공운송인 경우는 도착전 4시간

(3) 해상운송인 경우는 도착전 8시간

○ **사전통보의 제출방법: 사전통보는 2003년 12월 12일부터 전자제출로 해야한다. 첫째로 ABI / ACS에 의한 사전통보의 전송이고, 둘째는**

FDA의 사전통보 시스템 즉 FDA PN system interface at www.access.fda.gov 에 의한 전송이다.

○ 사전통보 제출자: 사전통보자료를 알고있는 자로서 수입자, 관세사 혹은 미국인 대리인 등이 포함된다.

○ 사전통보의 대상식품: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 제 201 (f) 조항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소비를 위한 식품과 음료수 등을 포함한다.

○ 사전통보요건이 면제되는 식품 :

(1) 미국에 도착하는 개인의 휴대식품으로서 개인소비용 식품

(2) 미농무성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는 고기류, 가금류, 그리고 계란류 식품

(3) 외국의 개인의 가정에서 만든 식품으로 미국에 살고있는 개인에게 선물로 보내진 식품

○ 사전통보의 접수후 확인통지: FDA는 사전통보자료를 접수한 후 확인통지를 제출자에게 보낸다.

○ 사전통보에 포함시키는 자료:

(1) 성명과 회사정보를 포함한 제출자의 신원

(2) 통관형태와 수입에 대한 미국관세시스템(ACS) 통관번호나 다른 미국통관 확인번호

(3) 적절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항구나 안전한 곳에 억류된 식품들의 위치

(4) 완전한 FDA 제품 코드를 포함한 품목확인, 일반명 또는 상품명, 교역 또는 상표명 (만약 일반 명이나 상품명이 다르다면), 최소포장단위로부터 최대단위포장용기의 양까지 기승 되는 양과 lot나 분류번호 또는 다른 구분이 가능한것 (적용 가능하다면)

(5) 제조자 신원

(6) 알 수 있다면 재배자 신원

(7) 원산지

(8) 선적자 신원

(9) 식품의 품목이 선적된 나라

(10) 예상되는 도착정보: 장소, 일자, 시간

(11) 미국세관통관 과정정보

(12) 수입자, 소유주, 수락자의 인원

(13) 수송인의 신원

○ 전자로 사전통보한 후 FDA 접수여부 확인: 접수확인이 날짜, 시간과 함께 발행됨

○ 사전통보의 수정과 갱신여부

(1) 수정은 특정하고 제한된 환경하에서 기존의 사전통보에서 알수없었던 제품 특수성이나 물량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일단 수용됨

(2) 수정은 식품품목의 본성 변경에는 이용될 수 없음

(3) 수정은 도착 두시간 전보다 늦게 제출되어서는 안됨

(4) 예정된 도착정보는 도착의 예정항구, 날짜, 시간에 있어 변화를 예측하도록 갱신될 수 있음

○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한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

(1)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한 경우 미국으로 반입이 거절됨

(2) 식품은 통관 항이나 충분한 안전 및 보안제공을 위해 안전시설에 보관되어야 하고, 수입자, 소유주, 또는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

(3) 구매자, 소유주, 수입자 또는 수취인은 수송 및 보관비용을 부담해야 함

라. 한국산 식품 수입규제사항

□ 통관지연 및 SAMPLING증가

○ **FDA검사**

- **샘플링 수거 : 물건도착-PICK UP(2-5일), 경비없음**
- **FDA 지정 시험소 검사(2주), 경비없음**
- **검사결과 문제 없으면 Release, 문제 있으면 청문회 개최(약 1달 소요), 경비 없음**

○ **세관검사**

- **세관이 물품이 도착하면 검사결정**
- **1주일 이내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지정장소(3 ~ 5일)**
- **검사를 받고난 후 문제 없으면 release**
- **검사는 컨테이너당 약 $800임**

○ **USDA검사**

- **도착항 검사(컨테이너 야드검사 : 1-2일), 경비없음**
- **일부검사 및 전사검사(전문 지정 검사장으로 이동, 검사비용 발생)**

○ **검사횟수**

- **세관검사 : 전체물품의 5% 수준**
- **USDA검사 : 전체물품의 30% 수준**
- **FDA 검사 : 전체물품의 30% 수준**

○ **검사관련사항**

- **수입국가·수입자 경력·제품의 특성·위생처리시설 구비여부에 따라 Sampling 여부 결정**

□ 소고기, 가금류등 육가공 함유식품 수입불가

○ **육류를 수출키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함**

- 첫째 : 수출국으로 지정이 되어야함(개인이 아닌 정부간 지정)
- 둘째 : 수출국내 제조업체 지정

○ 현재 수출요건
- 3% 이상인 meat 가공품 수입 불가
- 2% 이상인 poultry 가공품 수입 불가
- 가루로 만들어 일정온도에서 가열하여 soup base화 하는 경우
- 미국산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출장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단, record keeping이 잘 되어야 함)되나, 한국의 현재 환경에서 한국산과 혼재되지 않거나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규정

○ 식물 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외검역공고, 법령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

○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 검역국(APHIS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소속 PPQ(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에서 통관전 식물의 병충해 검역을 담당해 왔으나, 2001년 911 테러후 창설된 국가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 Security)이 APHIS의 검역기능 담당

마. 수입 검사 및 규제 관련 참고

< FDA 검사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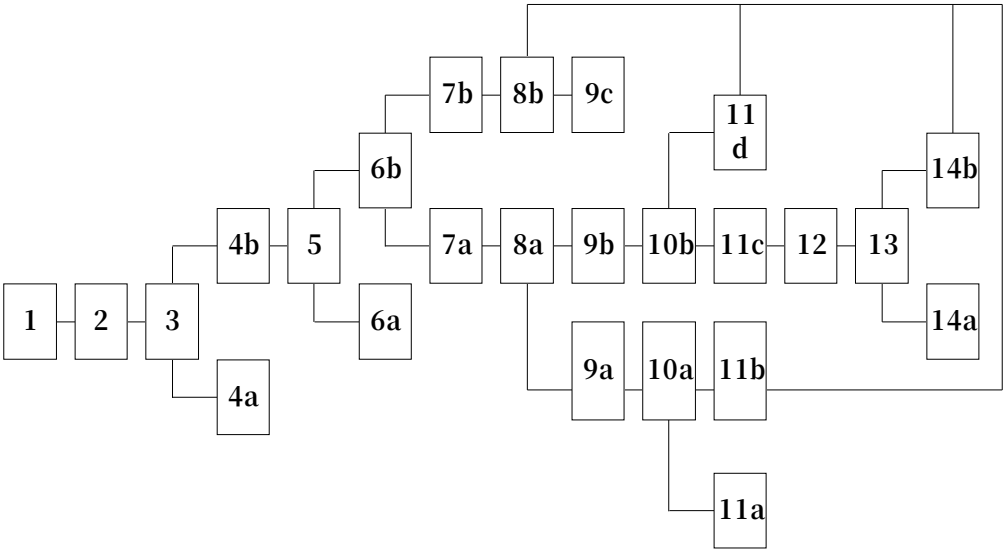

1. 통관신청 : 화물도착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2. 규제식품류의 신고방법 : FDA에서는 식품의 통과시 다음의 서류를 요구함
   - 세관통과신고서(CF 3461, CF 3461 ALT, CF 7501)
   - Commercial Invoice Copy
   - 문제발생시의 책임, 세금및 벌과금 납부에 대한 보증인
3. 서류 검토 : 필요시에는 물리적 검사, 양육검사, 샘플채집 등을 실시함

4A. 샘플채집 무필요 : FDA는 세관과 수입업자에 통관을 진행해도 좋다고 통지함

4B. 샘플채집 필요
   - 제품의 자연상태
   - FDA의 우선순위
   - 물품의 과거 내력

   FDA는 세관과 수입업자에게 " Notice of Sampling(샘플채집 통지서) "

를 보내고 수입화물은 후속 결과가 통보될 때 까지는 반드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함. 샘플채집이 끝난뒤에는 수입업자는 화물을 다른 창고로 운반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요)

5. 샘플 분석의뢰 : 채집한 샘플을 FDA 지역 실험실에 분석의뢰

6A. 분석결과 합격 : 요구기준에 합당하면 FDA는 세관과 수입업자에 통관허가서를 통지함

6B. 분석결과 불합격 : FDA기준이나 유관 법규에 합당하지 못하면 FDA는 세관과 수입업자에게 " 화물억류 및 보완요청 " 통지문을 보내어 서류보완 기회부여

- 세부 위반사항 통지
- 업자에게 10일이내에 화물의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게 함

서류보완 기회는 업자가 자신의 물품이 적절히 통관될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유일한 구제 수단임

7A. 보완자료 제출

" 화물억류및 보완요청 " 통지문을 접수한 화물의 실소유주(또는 관련자들)는 통관 당위성에 대해 구두 또는 문서로 자료제출

7B. 자료보완 거절 : 자료보완 요구서를 접수한 소유주는 자료보완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준비기일(10일 이내)을 연장할 수는 없음

8A. 보완자료 심의 : 화물주로 부터의 통관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 청취.

8B. 통관거절 통지 : FDA는 " 샘플채집 통지서 "를 보낸 사람과 같은 사람(또는 업체)에게 " 통관거절 통지서 "를 보냄. 기타 관련된자에는 사본을 송부

9A. 통관 당위성 증빙자료 제출 : 수입업자는 물품의 적절성을 증빙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함(책임있는 실험실에 의한 샘플의 분석결과와 인체에 무해한 식품임을 확인 가능한 발간된 자료 등)

9B. 재 조정처리 계획서 제출 : 수입업자는 "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to Recondition " 또는 " Perform Other Action(FDA양식 FD 766) "을 작성 제출. 이것은 라벨표기가 미흡하거나, 또는 다른 행위에 의해 불순

하게 하였거나 잘못 표기된 식품을 끄집어 내거나 또는 비식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요청서임. 반드시 세부적인 처리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9C. 재반출 및 폐기처분 : FDA는 세관으로부터 재반출 또는 폐기처분 허가서를 받음

Notice of Refusal Admission에 리스팅이 된 화물의 재반출 및 폐기처분은 세관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함

10A. 샘플추적검사 : FDA는 업자가 제시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 추적검사를 실시

10B. 재 조정계획 검토 : FDA는 수입업자가 제시한 재조정 계획을 검토하며 예치금이 요구됨

11A. 추적검사결과 합격 : 추적검사 결과 샘플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 억류해제 "라는 스탬프와" 해제 통지서 "가 세관과 수입업자에게 송부됨

11B. 추적검사결과 불합격 : 추적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FDA는 수입 업자에게 "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to Recondition " 또는 " Perform Other Action (9B 참조) "을 작성 제출토록 하거나 " Notice of Refusal of Admission(8B참조) "을 발급하여 통지함

11C. 수입업자의 재조정 계획 승인 : 수입업자의 재조정 계획이 만족스러우면 이를 승인하고 신청서에 스탬프로 " Merchandise Should be Held Intact Pending the Receipt of FDA's Release Notice "라고 표기함

11D. 수입업자의 재조정 계획 승인 불가 : 수입업자가 제시한 재조정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하지 않음

이때에 수입업자가 다시 제시하려는 조정 계획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절됨(신청서 양식 : FDA양식 FD 766)

12. 검역 및 샘플채취 : 수입업자가 재조정 처리를 끝내고 FDA에서 승낙을 얻게되면 검역과 샘플채집에 들어감.

13. 채집샘플 검사수행

14A. 분석결과 합격 : 샘플의 분석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억류해제 통지서가 수입업자 및 세관에 통보됨. FDA에 대한 수수료는 FDA양식

FD 790에 의하고 비용지불 사실을 세관에 통지함

14B. 분석결과 불합격 : 샘플의 분석결과가 계속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거절되며 8B단계로 되돌아 감

마찬가지로 FDA에 대한 수수료는 FDA양식 FD 790에 의하고 비용지불 사실을 세관에 통지함

< 식품위생 검사기관 >

□ FDA(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소　　속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 감독범위

- 육류를 제외한 국산 및 수입식품 전체
- 병에든 식수
- 알콜 성분 7% 이하의 주류

○ 담당업무

- 식품제조시설 및 식품창고를 점검하며,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미생물적 오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샘플의 채집 및 분석
- 시장출하전 식품 및 색소첨가제의 안정성 재검사
- 식품제조용 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사료의 안정성 모니터
- 식품공장 위생, 식품포장 여건, 위험분석 및 주요 관리요점 프로그램 등과 같은 양호한 식품제조 관행과 기타 생산기준을 확립
-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특정 수입식품의 안정성을 확인
- 불량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요청하며, 식품회수를 모니터
-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
- 식품업계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취급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 조 직

FDA는 ‘99년 6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이 기구가 개편되었음

◇ Office of Commissioner

- Deputy Commissioner/ Senior Advisory to the Commissioner
- Office of Executive Secretariat
- Office of the Chief Counsel
- Office of the Chief Mediator and Ombusman
-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 Office of Operations

-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BER)
-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HR)
-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FSAN)
-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CVM)
- National Center for Toxiological Research (NCTR)
- Office of Orphan Products Development (OOPD)
- Office of Regulatory Affairs (ORA)
- Office of Science (OS)

◇ Office of Policy

◇ Office of External Affairs

- Industry, Small Business, and Community Affairs Staff
- Office of Consumer Affairs
- Office of Health Affairs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 Office of Public Affairs
- Office of Special Health Issues
- Office of Women's Health

◇ Office of Management and Systems

◇ Office of Facilities, Acquisitions and Central Services
◇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 Services
◇ Office of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 Office of Planning and Evaluation

○ 연락처(소비자)
FDA Headquarters
Office of Consumer Affairs, HFE-88
5600 Fishers Lane, Rockville, MD 20857
인터넷 : www.cfsan.fda.gov/list.html (일반규정)
http://vm.cfsan.fda.gov/label.html (라벨링제도)
http://vm.cfsan.fda.gov/~lrd/foodadd.html (식품첨가물)
http://vm.cfsan.fda.gov/~dms/opa-col2.html (색소첨가물)
http://vm.cfsan.fda.gov/~lrd/lacf.html (공장등록제도)

□ FSIS(식품안전검사국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소　　속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감독범위
- 육류, 가금육 및 그 제품, 달걀가공제품

○ 담당업무
- 도살전후에 식용 동물의 감역 여부를 검사
- 육류 도살자 및 가공공장을 검사
- USDA의농업 마케팅 서비스와 함께 달걀가공제품을 모티너하며 점검
- 육류제품의 조리 및 포장, 공장위생, 열처리 및 기타 가공절차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 및 기타 재료사용의 생산기준을 설정
- 육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외의 육류 가공공장이 미국의 기준에 맞

는지 검사 및 확인

- 불량제품을 생산한 육류가공업체의 자발적인 제품 회수를 도모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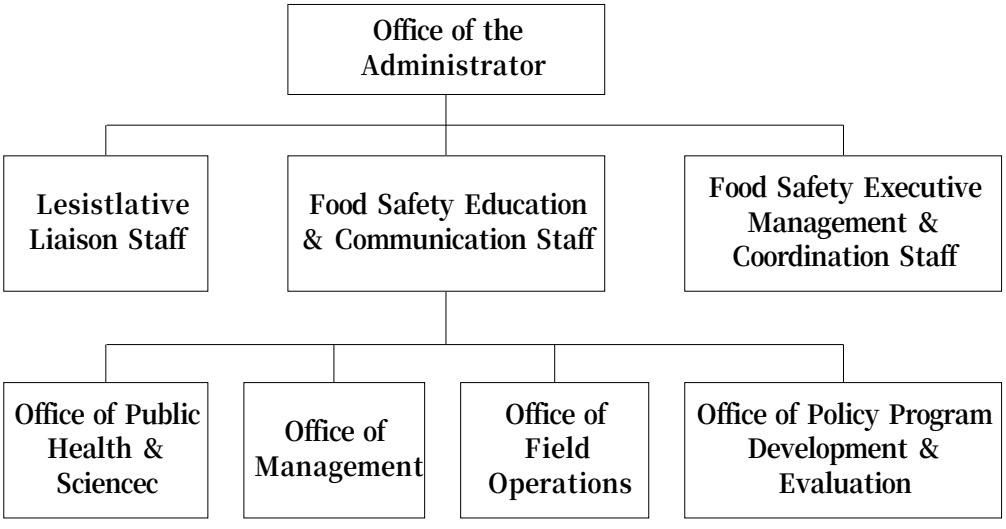

○ 연락처

FSIS Food Safety Education and Communications Staff Room 1175, South Building, 14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

인터넷 : www.fsis.usda.gov

□ EPA(미국환경보호국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감독범위 : 식수

○ 담당업무

- 식수의 안전기준을 설정
- 독성물질 및 폐기물을 관제하여 환경 및 먹이사슬에의 진입을 예방
- 주의 식품품질 관리를 지원하여 식수오염 방지방법을 구함
- 새로운 농약의 안전성을 결정하고 식품의 농약잔류 허용치를 설정하며, 안전한 농약사용에 관한 지침서를 출판

○ 연락처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401 M St., S.W.
Washington, DC 20460
인터넷 : www.epa.gov

□ 주류, 담배 및 총기관리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 소　　속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감독범위

- 알콜 성분 7% 이하의 주류 음료를 제외한 모든 알콜음료

○ 담당업무

- 주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식품안전법규를 집행함
- 주류제품 밀조사례를 조사함(FDA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연락처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Market Compliance Branch
650 Massachusetts Ave., N.W.
Room 5200, Washington, DC 20226
인터넷 : www.atf.treas.gov/core/alcohol/alcohol.htm

□ 국립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소　　속 : U.S. Department of Commerce

○ 감독범위 : 생선 및 수산제품

○ 담당업무

- 유료수산물 검역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위생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어선 및 수산가공공장, 소매가게시설 등을 검사하고 인가함

○ 연락처

Seafood Inspection Program
1315 East-West Highway
Silver Spring, MD 20910
인터넷 : www.nmfs.gov/iss/services.html

< 주요 농수산물(식품관련) 정부기관 >

1) 생산관련 분야

기관명	기능/주요업무	주소/전화/Fax/Website대표자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미국의 농업정책 총괄 기관	14th & Independence Ave.,SW Washingtion, DC 20250 202-720-2791 www.usda.gov Dan Glickman (Secretary of Agriculture)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농산물 규격, 품질 인증기관 농산물 수매, 곡가정책 및 생산전반 전담 부서 ○USDA 산하기관	USDA와 주소동일 202-720-5115/202-720-7135 (F) www.ams.usda.gov Kathleen A. Merrigan (Administrator)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	○각종곡물의 규격 검사기관 곡물의 품질검사 시행 ○USDA 산하기관	USDA와 주소동일 202-720-0219 202-205-9237(F) www.usda.gov/gips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농산물 및 동 · 식물류 등의 연구개발기관 신종 농작물의 개발연구 ○토양, 환경문제 등	USDA와 주소동일 202-720-3656/202-720-5427(F) www.ars.usda.gov Floyd P. Horn(Administrator)

2) 무역관련 분야

기관명	기능/주요업무	주소/전화/Fax/Website대표자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미농무부 산하 대외농산물 수출 기구 ○외국의 농업환경, 시장등 연구조사	USDA와 주소 동일 202-720-7115 202-720-8097(F) www.fas.usda.gov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or (ITA)	○세계 무역 진흥기구 ○농산물 분야 포함, 대외 무역 환경 및 교역실적 모니터링 ○미상무부 산하 기관	202-482-3809 202-482-5819(F) www.ita.doc.gov Daniel Cruise (Office of Public Affairs)

3) 통관 · 검역관련 분야

기관명	기능/주요업무	주소/전화/Fax/Website대표자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농작물 동식물 검역기관 ○검역관련 규정제정 ○USDA 산하기관	USDA 주소와 동일 202-720-2511 202-720-3982(F) www.aphis.usda.gov
Food & Drug Administration (FDA)	○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류 수입시 통제기관 ○의약품 전반 규정제정 ○미보사부 산하기관	HFI-40 Rockville, MD 20857 301-443-1544 / 301-594-6004(F) www.fda.gov Jane E. Henney, M.D. (Commissioner)
U.S. Customs Service	○미정부 통관 전담부서	13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229 202-927-2095 / 202-927-1393(F) www.customs.gov Raymond W. Kelly(Commissioner)

<FDA지역사무소>

구 역 (District)	해당되는 주 · 도시	주 소 (Address)	전 화 (Telephone)
New England	MA, ME, NH, VT, RI, CT	One Montvale Ave. Stoneham, MA 02180-3542	781-279-1675
New York	NY City & Long Island	850 Third Ave. Brooklyn, NY 11232-1593	718-340-7000
Buffalo	all of NY except NY city & Long Island	599 Delaware Ave. Buffalo, NY 14202	716-551-4461
Philadelphia	PA, DE	U.S.Customhouse Rm. 900 2nd & Chestnut Sts. Philadelphia, PA 19106	215-597-3040
New Jersey	NJ	10 Waterview Blvd. 3rd Floor Parsippany, NJ 07054	973-526-6000
Baltimore	MD, DC, VA, WV	900 Madison Ave. Baltimore, MD 21201	410-962-3396 410-962-3593
Atlanta	GA, NC, SC	60 Eighth St., NE Atlanta, GA 30309	404-347-4344
Florida	FL	555 Winderley Place Maitland, FL 32751	407-475-4700
San Juan	PR	P.O. Box 5719 Puerta de Tierra Station San Juan, PR 00906-5719	809-729-6894
Minneapolis	MN, WI, ND, SD	240 Hennepin Ave. Minneapolis, MN 55401-1999	612-334-4100
Chicago	IL, MI	300 S. Riverside Plaza Suite 550 South Chicago, IL 60606	312-353-5863
Cincinnati	IN, OH, KY	1141 Central Parkway Cincinnati, OH 45202-1097	513-684-3501
Kansas City	KS, IA, NE, MO	P.O. Box 15905 Lenexa, KS 66285-5905	913-752-2100
Nashville	TN, AL	297 Plus Park Blvd. Nashville, TN 37217	615-781-5385

< 신선과일의 수입요건 >

□ 배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승인된 봉지로 씌운후 재배되어야 함**

○ **재배지 검사실시**

- **봉지씌운 직후 :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검사**
- **수확기 : 한국과 미국의 식물검역관 공동검사**

○ **수확된 과실에 대한 한·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후 한국의 식물검역증 및 미국의 대외식물검역증이 첨부되어야 함**

[참고 1] 미국 수출단지 승인요건

○ **승인된 과수원은 수출전에 미국 검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30ha 이상으로 집단화 되고 200톤이상 수출이 가능해야 함**

○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야 함**

[참고 2] 미국의 규제대상 검역병해충(23종)

○ **애모무늬잎말이나방, 배꽃바구미, 콩가루벌레, 아세아잎말이나방, 감나무, 잎말이나방, 잎사과잎말이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배명나방, 버들가지깍지벌레, 애기잎말이나방, 복숭아큰나방, Myelois sp(명나방과), 갈색잎말이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sp(가루 깍지벌레과), 복숭아거위벌레, 먼지응에, 벚나무응에, 검은무늬명, 잿빛무늬병, 윤문병**

[참고 3] 한국산 배 대미 수출검역 절차 및 내용

검역구분	내 용 요 약
수출재배 단지확정	○ 재배단지 충족조건 - 타식물 격리, 지역표식, 병충해방제 실시 및 모니터링 - 신규 후보재배단지는 수출시즌전 미국 APHIS가 현지 검사
재배단지승인	○ 생산자가 검사신청서를 관할 식검 출장소에 제출 - 검사일 30일전, 신청자는 재배지역에 표찰을 세워야 함
검사시기, 방법	○ 검사시기는 과실봉지를 씌운 직후와 수확전에 함 - 봉지씌운 직후 검사 : 국립 식물검사소 - 수확전 검사 : 국립 식물검사소와 APHIS 합동검사 ○ 재배지 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 식검
선과장검사	○ 식물병해충, 포장상자, 재배단지외 지역산 과실 혼합 여부 등에 관한 검사 실시 ○ 생산자는 선과장 지도, 평면도, 운영계획을 협력기관(농협)을 통해 식검과 APHIS에 제출 ○ 식검과 APHIS 공동 검사 실시 - 선과라인 더미당 6% 무작위 추출검사 ○ 수출선적상자에는 대미 수출승인표시가 되어야 함
검역증발급	○ 국립식물검역소는 적재선박별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 APHIS는 대외지역 식물검역증 발급
통관항검사	○ 미국의 통관항에서는 증명서의 적절한 기재여부, 포장상자의 적절한 표시 여부 등을 검사

주 : APHIS(미 동식물검역소,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참고 4] 대미 수출용 배 재배지 검사 신청서 양식

< 대미 수출용 배 재배지 검사 신청서 >

대미 배 수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배지 검사를 신청함

날자
주소 :
직업 :
성명 :

국립식물검사소 _____지소_____출장소장 귀하

품명	주소	농가번호	수목수	예상수확시기	면적	예상수출량	비고

첨부 : 1. 비고란에 임대농가는 임대임을 표시
2. 생산지역의 지도 첨부

□ 단감

○ 2003. 6. 25 수입허용 확정안 공고

○ 한국 식물검역관의 감 생산지 병해충 검사

○ 수확후 및 수출품의 포장전 병해충 검사후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미 항구 도착후 통관전 검사

□ 사과

○ 한국에서 1.1℃에서 40일간 저온처리후 미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MB훈증(48g/㎥/10℃ 이상/12시간 등)처리를 해야함

○ 한국의 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함

□ 감귤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한.미 식물검역관에 의한 공동 재배지검사 실시

- 낙화후 검사는 신규지역 지정시에만 공동검사

○ 생육기간중 감귤궤양병 검정을 위한 박테리오파아지테스트 실시

○ 수확된 과실에 대한 한·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

○ 위생증 부기사항 : 여기 선적된 한국산 과실은 감귤궤양병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며, 미연방법규(CFR)319.28조 및 319.56조에 APHIS측이 명시한 모든 요건에 부합됨

[참고 1] 미국 수출단지 승인요건

- 온주밀감 이외의 다른 감귤나무가 없어야 함
- 감귤궤양병에 감염된 나무가 없어야 함
- 온주밀감 대목 뿌리에서 뻗어나온 탱자속 식물체가 없어야 함

[참고 2] 미국의 규제대상 검역병해충

- 병원균(2종) : 감귤궤양병, 흑반병

- **해충(85종) : 깍지벌레류(온실가루, 화살, 루비, 뿔밀), 진딧물류(귤소리, 붉나무소리), 노린재류(풀, 갈색날개, 썩덩나무), 총채벌레(대만, 중국관, 싸리), 나방류(귤굴, 왕담배, 차잎말이, 거세미, 밤, 우묵밤), 기타해충 등**

<자료 문의처>

○ 태국, 멕시코 수입제도 문의처 (정보서비스본부 무역정보 1팀)
- 전화 : (02)6300-1391~1397 / 팩스 : (02)6300-1609

○ 일본 수입제도 문의처(도쿄 aT센터)
- 전화 : 81-3-5367-6656 / 팩스 : 81-3-5367-6657

○ 중국 수입제도 문의처(베이징 aT센터)
- 전화 : 86-10-6410-6120~1 / 팩스 : 86-10-6410-6122

○ 미국, 캐나다 수입제도 문의처
- 전화 : 1-516-829-1633 / 팩스 : 1-516-829-6521

○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문의처(싱가포르 aT센터)
- 전화 : 65-6324-1233, 0402~3 / 팩스 : 65-6324-0446

○ EU 수입제도 문의처(로테르담 aT센터)
- 전화 : 31-10-415-1091 / 팩스 : 31-10-462-1271

○ 러시아 수입제도 문의처(모스크바 aT센터)
- 전화 : 7-495-258-1397 / 팩스 : 7-495-258-1396

○ 대만 수입제도 문의처(타이페이 aT센터)
- 전화 : 886-2-8786-6791 / 팩스 : 886-2-8786-6793

※ 본자료집에 실린 내용의 무단전제, 복사 또는 인터넷 게재 등을 금합니다.

본 자료집은 조사시점의 제도, 통계자료 및 현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된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본 자료집의 발간이후 조사대상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자료집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24시간 부정비리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